

2023. 10

정기연구 2023-07

수산발전기금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

박진규·조용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3. 10
정기연구 2023 - 07

수산발전기금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

박진규 (연구위원)
조용준 (선임연구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박진규 : 제1장~제6장
 - 조용준 : 제5장

요 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기금의 설치)에 따라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 최근 수산분야는 만성적인 어선원 인력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력 고령화, 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다양한 거시 외부환경 변화의 위기상황 직면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산업 육성·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인 수산발전기금의 사업 이용 확대를 위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재원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것

□ 정부 수산정책 방향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현황

- 수산분야 핵심 정책과제
 - ①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 ②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 구축
 - ③ 최신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가공식품 개발 및 인프라 조성
 - ④ 블루푸드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 ⑤ 블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형·연계형 마케팅 강화
 - ⑥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 ODA 및 국제협력 확대

⇒ 수발기금 사업과 관련 있는 정부정책은 ②, ③, ⑤ 등임
-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 ① 수발기금 사업 구성 : 경상사업 12개, 용자사업 8개로 구성
 - ⇒ 경상사업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 사업, 비축사업, 수산물 자조금 지원,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지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피해보전직불금, 자유무역협정 이행, 수산모태펀드 출자, 원양어선 안전관리, 수산물 유통 정보 조사

⇒ 용자사업 :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양식어업지원,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산장비구입지원, 우수수산물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지원

② 수발기금 사업추진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의 순 조성액은 지속적인 감소세(2020년 10,368 → 2022년 9,936억원)

⇒ 2022년 대비 2023년(계획) 정부의 수산물 가격지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에 기금의 추가 재원 마련 시급(비축사업 : 1,085억원 → 1,750억원, 수산물수매지원 : 852억원 → 1,15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천억원 증액)

⇒ 2022년 대비 2023년(계획) 기금 자체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00억원 증가했지만 재고자산(수산물)매각대금, 면허료 및 수수료(공유수면 점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에서 재원 편입의 변동성이 크며, 경상사업 증가분 충당이 힘든 상황

[시사점]

- 매년 기금의 자체수입 대비 **경상지출 예산 증가**가 계속되어 대규모 **신규재원** 발굴 절실
- 거시 외부환경 변화와 정부 수산정책에 합치하는 **신규사업** 발굴로 수산업 미래산업화 도모
- ☞ 기금의 재원을 고갈시키는 경상사업 보다는 원금 회수 원칙인 용자사업 중심으로 발굴
- 국정 기조인 민간이 주도하는 수산정책 실현을 위해 수발기금 **용자사업 규모 지속적 확대**

□ 국내외 유사 기금 사례 비교

- 사례 비교 대상 유사 기금 : 경영 지원,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산업의 육성 등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농·축·수산 분야 주요 기금을 분석
 - 국내 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 해외 기금 : 일본 어업관계 제도자금,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

○ 국내외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

①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사업 부재

유사 기금 사업	수발기금 부재 사업(신규사업 후보)
축발기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가칭)배합사료생산기반확충
축발기금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가칭)폐사어처리지원
일본 연안어업개선자금 연료유 소비절감장치 등 설치자금, 자원 관리형어업추진자금, 신양식기술 도입자금	· (가칭)연안어업개선자금 *연료유 소비절감장치, 자원관리 어업추진을 위한 어구어로장비 등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 지속 가능한 어업 육성 및 수생 생물 자원의 복원보존, 어선원 건강안전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 등	**신양식기술도입자금 등 ***승무원 안전기기 설치자금, 어선 전복 방지기기 설치자금, 어선 충돌 방지기기 구입자금 등

② 비대면 거래 트렌드에 대비한 직거래 및 온라인거래 활성화사업 부재

유사 기금 사업	수발기금 부재 사업(신규사업 후보)
농안기금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 (가칭)수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농안기금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가칭)수산물직거래활성화
농안기금 농산물마케팅지원	· (가칭)수산물마케팅지원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 어업 및 양식 제품의 가공마케팅을 통해 EU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사업	
축발기금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 (가칭)수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축발기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 (가칭)양식사료직거래활성화

③ 시설 현대화 및 신규창업 시설자금 등 수산가공수출업체 시설자금 부재

유사 기금 사업	수발기금 부재 사업(신규사업 후보)
농안기금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가칭)수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농안기금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식품 외식종합자금	· (가칭)수산시설자금종합지원 *수산물 제조가공수출업체 시설현대화 지원
일본 어업근대화자금 어선어구 보관 및 수리시설, 어업용 자재보관시설, 제빙 냉동 시설 등	· (가칭)어업근대화자금 *어선어구 보관 및 수리시설, 어업용 자재보관시설, 어선용 유수공급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제빙 냉동 시설, 수산물 판매시설, 수산물보관시설 등

④ 안정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재원 발굴 필요

⇒ 농안기금 대비 수발기금은 소규모 재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매년 재원의 변동성 발생(만기도래 영어자금 회수 감소, 재고자산 매각대 감소 등이 영향)

· 2022년 자체수입 기준, 수발기금은 비축수산물판매수입이 688억원, 수산물공매납입금이 584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나머지 재원은 100억원 미만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판매수입이 6,760억원으로 가장 확실한 대규모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농산물 수입이익금이 880억원으로 재원 종류는 단순하지만 대규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 현장 관계자 실태 조사

○ 수발기금 관련자 정성조사 기획

- 조사 목적 : 수발기금 등 정책자금 이용현황, 자금 사용 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기금 사업 이용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조사 대상 :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주요 고객집단(중도매인협회, 수산가공수출업체),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관계자 등

- 조사 방법 : 조사 대상 그룹에 대하여 현장 방문(구조화된 정성 조사지 활용)과 유선을 통한 의견 청취, 자료 요청 등
- 조사 항목 : 업체 및 기관(대출취급기관) 개요, 정책자금 이용현황, 자금 사용 시 애로점 및 기금 이용고객 민원사항, 개선 방향 등

○ 정성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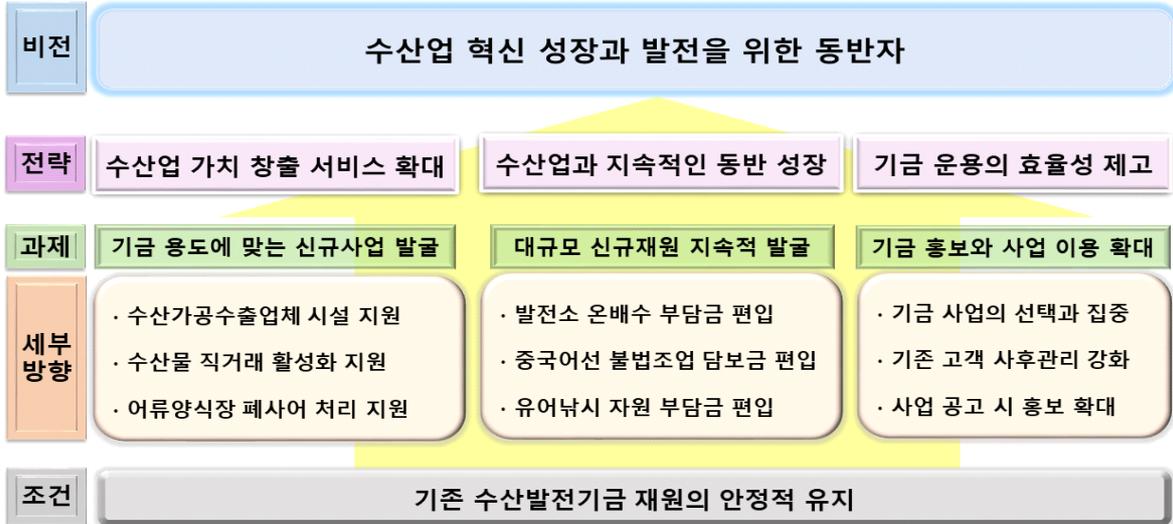
- 수발기금 포함 정책자금 이용 현황 : 업체는 미약한 담보력과 농신보 발급 제약 등으로 수발기금 이용에 한계가 있고, 수발기금의 존재를 몰라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수발기금 이용 시 문제점 : 단기성 용자자금 중심으로 매년 대출 상환 압박과 서류 작업 불편, 기금의 용자금리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차별 적용으로 정책자금 보편성 약화 등
- 수발기금 이용 활성화 방안 : 기존 고객에 대한 대출 한도 증액,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수산물 가격지지 사업 지원 강화
- 산지중도매인 자금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확대 요구가 강함
 - ☞ 산지중도매인은 수산물 유통의 시작점으로서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전량 구매 후 전국적으로 유통, 판로확보 곤란 시 해외(아프리카 등) 수출을 통해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중요 역할 수행

□ 수발기금 사업전략 및 운영 방향

○ 시사점 종합

- ① 수산업 거시 외부환경 변화 대응 및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 ☞ 현장의 단순 민원성 사업이나 기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배제
- ②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규모 신규재원 발굴과 기금 편입 공감대 형성
- ③ 중요 현안사항 적시 대응을 위한 기존사업의 확대·폐지 등 구조 조정

○ 수산발전기금 운용전략 콘셉트



○ 수산발전기금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후보, 기존사업 선택과 집중 등 세부 방향

구분	사업명 및 지원 방향	비고							
신규사업 후보 (3)	· 수산가공수출업체 시설 지원	· 수산물 제조·가공수출업체 시설 현대화, 수산 가공업체 신규 창업을 위한 설비 구축 지원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직거래 매장 신규 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 보증금과 시설 설치비용, 어업인 생산자단체, 영어조합법인 등 가공업체(단체)로부터 국산 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 어류양식장 폐사어 처리 지원	· 폐사어 처리시설 폐사어 수거운반용 중장비, 퇴비화 및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등 지원							
신규재원 후보 (3)	·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	· 최대 600억원 대규모 재원 편입 가능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 최대 200억원 대규모 재원 편입 가능							
	· 유어낚시자원부담금	· 최대 200억원 대규모 재원 편입 가능							
기금사업 선택과 집중	<table border="1"> <tr> <td>가격 지지 사업</td> <td>· 우수수산물지원(용자사업)</td> <td rowspan="3">· 수산물 가격지지 사업 · 비축사업(경상사업)과 수산물수매지원(용자사업)에 대해서만 전년 대비 예산 증액 · 용자사업 중심 예산 확대 필요</td> </tr> <tr> <td>사업 확대</td> <td>· 수산물수매지원(용자사업)</td> </tr> <tr> <td>사업 폐지</td> <td>· 산지 및 소비자 유통자금(용자사업)</td> </tr> </table>	가격 지지 사업	· 우수수산물지원(용자사업)	· 수산물 가격지지 사업 · 비축사업(경상사업)과 수산물수매지원(용자사업)에 대해서만 전년 대비 예산 증액 · 용자사업 중심 예산 확대 필요	사업 확대	· 수산물수매지원(용자사업)	사업 폐지	· 산지 및 소비자 유통자금(용자사업)	
	가격 지지 사업	· 우수수산물지원(용자사업)	· 수산물 가격지지 사업 · 비축사업(경상사업)과 수산물수매지원(용자사업)에 대해서만 전년 대비 예산 증액 · 용자사업 중심 예산 확대 필요						
사업 확대	· 수산물수매지원(용자사업)								
사업 폐지	· 산지 및 소비자 유통자금(용자사업)								
	·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지원	· 기금 설치 목적 및 용도와 맞지 않음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7
	1. 연구 방법	7
	2. 연구 내용	9
제2장	정부 수산정책 방향 및 수산발전기금 현황	11
	제1절 국정 비전 및 수산정책 방향	13
	1. 국정 비전 및 목표	13
	2. 수산업 거시환경 및 정책 방향	16
	3. 수산업·어촌부문 핵심 정책	24
	제2절 수산발전기금 현황	29
	1. 수산발전기금 일반 개요	29
	2. 수산발전기금 주요 사업	37
	3. 수산발전기금 사업실적 분석	41
	제3절 시사점	45

제3장	국내외 유사 기금 사례	49
	제1절 국내 사례	51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3
	2. 축산발전기금	62
	제2절 국외 사례	71
	1. 일본 어업관계 제도자금	71
	2.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EMFAF)	77
	제3절 시사점	83

제4장	수산발전기금 관련 실태 조사	89
	제1절 실태조사 개요	91
	1. 조사 목적 및 방법	91
	2. 주요 조사 항목	92
	제2절 실태조사 결과	93
	1. 수발기금 포함 정책자금 이용 현황	93
	2. 여타 정책자금 대비 수발기금 한계점	95
	3. 수발기금 이용 활성화 방안	98

제5장	기금 사업전략 및 운영 방향	101
	제1절 기본 방향	103
	1. 시사점 종합	103
	2. 수산발전기금 비전 및 전략	108
	제2절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제안	110
	1. 신규사업 분야	110
	2. 신규재원 분야	118
	제3절 기금 사업 운영 방향	126
	1. 기금 사업의 선택과 집중	126
	2. 기존 고객 사후관리 강화	127
	3. 사업 공고 시 홍보 확대	129

제6장	결 론	131
	제1절 연구 결과	133
	제2절 정책 제언	140

참고문헌	142
-------------	-------	-----

표 차례

〈표 2-1〉 지난 10년간 어가수, 어가인구 및 65세 이상 비중	19
〈표 2-2〉 연도별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21
〈표 2-3〉 연도별 양식어가 어업경영비 지출 현황(평균치)	22
〈표 2-4〉 수산발전기금 관리기관	33
〈표 2-5〉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주요업무	34
〈표 2-6〉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의 용도별 분류(2023년 기준)	37
〈표 2-7〉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의 주요내용(2023년 기준)	38
〈표 2-8〉 수산발전기금 용자사업의 성격별 분류 및 지원대상(2023년 기준)	39
〈표 2-9〉 수산발전기금 용자사업의 주요내용(2023년 기준)	40
〈표 2-10〉 수산발전기금 최근 3년간 재원조성 실적	41
〈표 2-11〉 수산발전기금 최근 3년간 수입지출 실적	42
〈표 2-12〉 수산발전기금 최근 3년간 경상사업 지원실적	43
〈표 2-13〉 수산발전기금 최근 3년간 용자사업 지원실적	44
〈표 3-1〉 국내 기금의 자금 운용 목적에 따른 분류	52
〈표 3-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원 조달 및 운용 규모	53
〈표 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경상사업 지원분야	54
〈표 3-4〉 농안기금과 수발기금의 경상사업 비교	57
〈표 3-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자사업 지원분야	59
〈표 3-6〉 농안기금과 수발기금의 용자사업 비교	61
〈표 3-7〉 축산발전기금 재원 조달 및 운용 규모	62
〈표 3-8〉 축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지원분야	63
〈표 3-9〉 축발기금과 수발기금의 경상사업 비교	67
〈표 3-10〉 축산발전기금 용자사업 지원분야	68
〈표 3-11〉 축발기금과 수발기금의 용자사업 비교	70
〈표 3-12〉 어업관계 제도자금의 총괄표(2021.6. 기준)	71

〈표 3-13〉 어업근대화자금의 세부 종류 및 주요 용도	72
〈표 3-14〉 어업금대화자금 종류별 이율 및 상환기간	73
〈표 3-15〉 무이자 연안어업개선자금의 세부 종류, 대출 한도 및 상환기간	74
〈표 3-16〉 어업진흥자금의 종류별 이율 및 상환기간	75
〈표 3-17〉 어업경영유지안정자금 사용 분야별 이율, 상환기간	76
〈표 3-18〉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1’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	80
〈표 3-19〉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2’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	81
〈표 3-20〉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3’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	82
〈표 3-21〉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4’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	82
〈표 3-22〉 친환경·저탄소 관련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	84
〈표 3-23〉 직거래·온라인거래 관련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	85
〈표 3-24〉 시설지원자금 관련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	86
〈표 3-25〉 수발기금, 농안기금, 촉발기금의 2022년 자원(자체수입) 비교	87
〈표 4-1〉 수산발전기금 관련자 정성조사 기획	91
〈표 4-2〉 수산발전기금 이용 및 운용 관련자 대상 정성조사 기획	92
〈표 5-1〉 수산발전기금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후보, 기존사업 선택과 집중 등 세부 방향 ..	107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목적	6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모식도	8
[그림 2-1] 기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17
[그림 2-2] 수산업어촌 부문의 정책 비전 및 핵심 추진과제	25
[그림 2-3]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조직도	34
[그림 2-4]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지원절차	35
[그림 2-5] 수산발전기금 용자사업 지원절차	36
[그림 3-1]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의 운용 전략(목표, 임무, 우선순위 사업) 종합	78
[그림 5-1] 수산발전기금 운용전략 콘셉트	108
[그림 5-2] '기술보증기금 모바일 앱 서비스' 사례	130

제 1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수산업발전기금(이하, 수발기금)은 1999년 9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2001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설치 당시 262억원 규모(어업경영자금 용자 등 5개 사업)로 시작한 동 기금은 2022년 기준 순 조성액 9,942억원(총 조성액-경상지출 등 사용액)으로 성장, 사업수 또한 20개(경상 12개, 용자 8개)로 크게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정부 예산인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같이 엄격한 통제 위주의 경직된 재정 활동과는 달리 특정산업 부문의 육성·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설치된다. 수발기금 역시 수산업 경영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설치되었고,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수발기금 사업(용자, 보조 등)의 항목에 있어서 신정부의 수산정책 기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금 사업에 있어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근거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¹⁾ 제3조(정의)²⁾와 제49조(기금의 용도)³⁾를

- 1) 수발기금 근거법은 1999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2009년 「수산업법」, 2015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변경되어옴
- 2) 수산업(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양식업), 수산인(어업인, 어업법인 종사자, 생산자단체 구성원,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 종사자, 어선원 등), 어업인, 어업경영체(어업법인), 생산자단체(수협중앙회 및 수협조합, 자조금단체, 어업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어촌, 수산물, 수산자원 및 어장까지 지원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음
- 3)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양식어업의 육성,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용자, 산지 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 개선, 수산물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수산물 보관·관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해양 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새로운 어장의

보면, '어선원 복지증진'과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이 이 있으나 현행 수발기금 용자사업 등에는 빠져있다.

코로나팬데믹 이후로 어선어업계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어가인구의 고령화와 지속적인 감소, 외국인조차 취업을 기피하는 어선원 직종의 특수성 등으로 볼 때, 어선원 근로환경 개선 등 복지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어선 내 휴식공간 확보, 어선원 처우 개선, 휴어기 시 어선원 고용 안정화 등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수산분야를 둘러싼 대외적 위협 요인 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6월 26일부로 원전 오염수 방류용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원전 오염수를 2023년 8월 24일(목), 13시부터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수산물 안전성 여부를 떠나서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두려움으로 수산물 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수산물 가격 하락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참고로, 안전성 여부와 관련하여 2023년 8월에 있었던 과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토론회 결과를 인용하자면⁴⁾ 해양환경공단은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 중 세슘-137 농도는 0.01~0.03Bq/kg이며, 이것은 원전 사고 전후로 현재까지 유사하여 영향이 거의 없고, 자연상태 수준으로서 안전하다고 하였다. 즉, 2011년 사고 이후 전 해역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등 총 78,000건)를 실시한 이후로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없었다. 미 FDA에서도 2011년 이후로 미국 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1,749건) 결과, 검사를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방사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 인자에 대한 오해와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를 한동안 꺼릴 수 있으며, 이는 산지에서의 수산물 상장부터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상기의 원전 오염수 방류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수발기금 사업 중 경상사업에서 비축사업, 용자사업에서 우수수산물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산지 및 소비자 유통자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발, 수산물가공업 육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어선원 복지증진,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으로 근거법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사용 용도의 범위가 광범위함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원전 오염수 논란이 낳긴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2023.8.8.) 참조

이에 따라 정부는 비축사업을 2022년 대비 약 700억원 증액(2022년 1,085억원 → 2023년 1,750억원)하였고, 수산물수매지원도 약 300억원 증액(2022년 852억원 → 2023년 1,153억원)하였다. 하지만 정작 수산물 유통의 시발점인 산지중도매인 어대금 결제자금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과 수산물 가공수출업체의 원료구매 자금인 우수수산물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거의 동결되어 현장으로부터 자금지원 확대 요청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023년도 용자사업 총예산(4,031억원) 중 핵심사업을 보면 우수수산물지원(1,324억원), 수산물수매지원(1,153억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1,186억원) 예산으로 90.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갑작스러운 예산 증액은 수발기금 사업예산의 계획적인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재원의 발굴이 매우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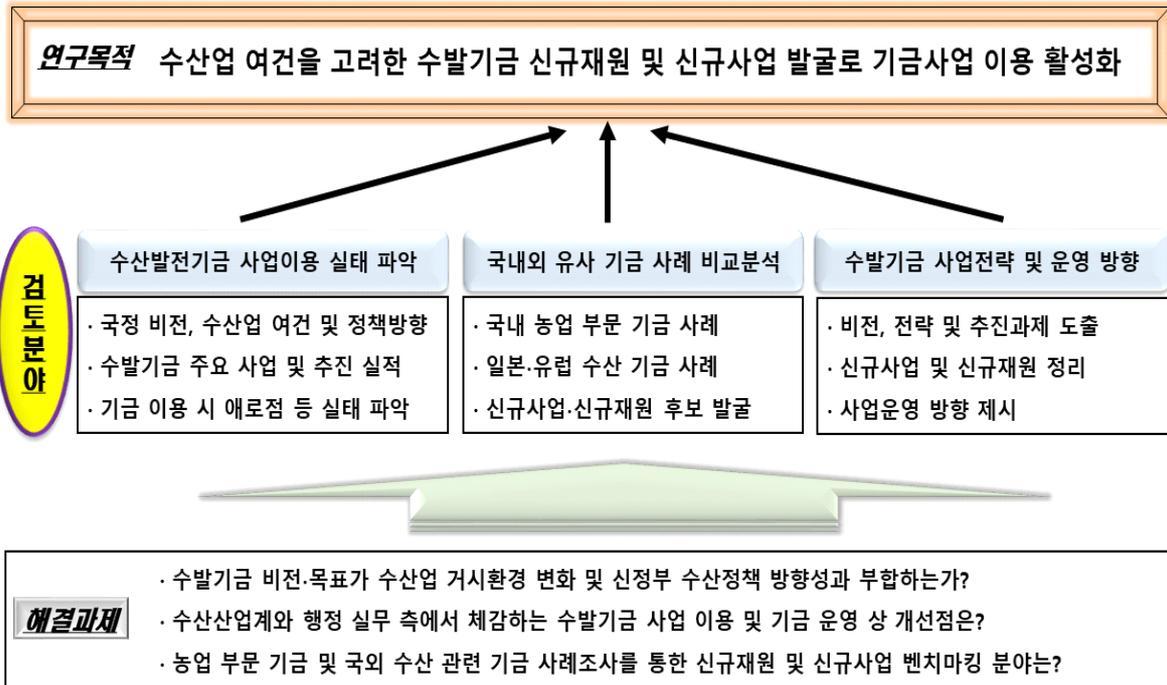
정리하면, 새정부의 수산정책 방향과 거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수발기금 사업전략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수산업, 어촌, 전후방 산업 및 관련 종사자들까지 아우르는 근거법령의 광범위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연구 목적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설치된 수발기금 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정부의 국정 목표와 수산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금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재원 및 사업 분야 등에 있어서 재검토를 통한 사업조정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발기금 사업 이용 확대를 위해 대내외 거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재원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사업의 구조조정 및 중장기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 ① 신정부의 국정비전, 수산업 거시환경 변화 및 수산정책 방향 분석, 수발기금의 주요 사업과 추진실적 검토를 통해 수산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등 시사점을 정리한다.
- ② 국내 유사 기금 및 일본유럽의 수산 관련 기금 사례를 조사하여 중점 지원 분야 및 지원 조건을 파악하고, 수발기금 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 ③ 수발기금 관련 현장 관계자 면접조사를 통해 기금 사용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산업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분야를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목적

제 2 절 |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수산업은 어가인구 고령화 및 감소, 어촌지역 소멸 위기라는 위협 요인에 둘러싸여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장에서는 스마트·자동화 및 디지털기술 보급 확대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다. 신정부의 수산정책 기조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바, 수발기금 사업의 재조정,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연구와 현장 관계자 정성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1) 문헌연구(선행연구, 부처수발기금 사무국 자료, 언론기사, 법령정보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각종 문헌자료를 토대로 수산분야를 둘러싼 거시환경 변화와 신정부의 수산정책 기조를 파악한다. 아울러 수발기금의 개요, 주요 사업 종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다.

국내 농업분야 기금과 일본 및 유럽의 수산 관련 기금 운영사례를 홈페이지 및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한다. 먼저 농업분야 기금은 농가 경영지원, 유통구조 개선, 원활한 수급,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 등 수발기금과 설치 목적이 유사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축산발전기금 사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는 일본 수산청의 ‘어업관계 제도자금’, 유럽 집행위원회의 ‘해양수산양식기금 (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 : 2021~2027)’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분야를 벤치마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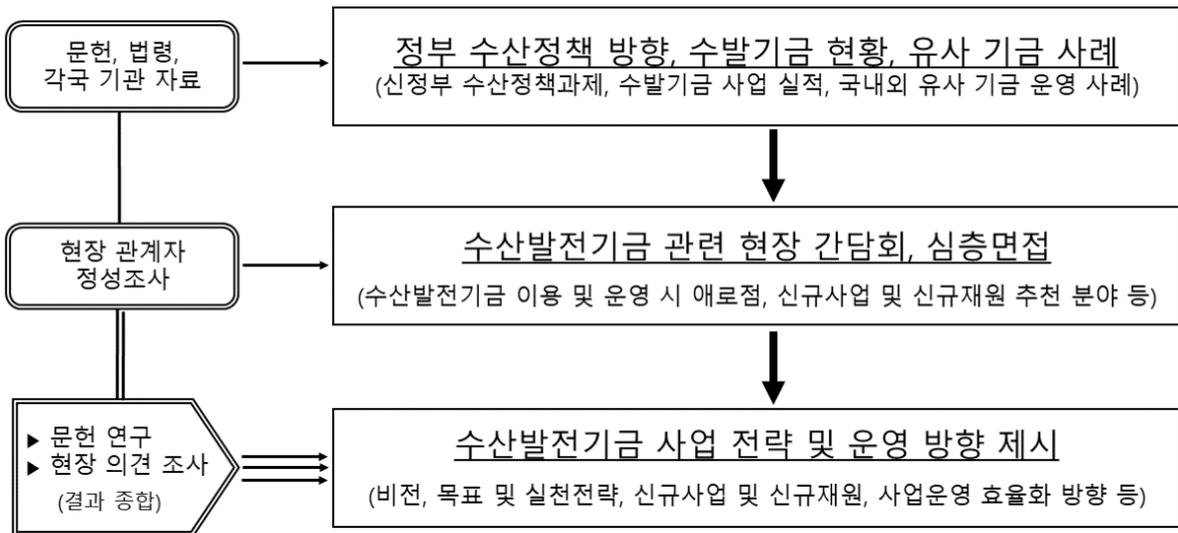
2) 현장 관계자 정성조사(수산업 종사자, 대출취급기관, 수발기금 사무국 등)

수발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먼저 수산업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은 매우 광범위하며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가공업계 대표, 산지중도매인 등 수산물 유통업계, 수발기금 대출취급 기관 관계자, 수발기금사무국 담당자, 기타 관련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수발기금 이용 실태 및 문제점, 수발기금 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상기의 문헌연구와 현장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대외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수발기금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분야를 제안하고 사업운영 방향을 정리한다.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모식도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정부의 수산정책 방향 및 수산발전기금 현황을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신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수산업 거시환경 변화 및 핵심 정책을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수산발전기금의 일반 개요, 주요 사업, 예산 규모 및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고, 제3절을 통해 정부 수산정책과 수발기금과의 연계성 등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3장은 국내외 유사 기금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제1절은 농업 분야 기금으로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사례를 조사한다. 제2절은 일본 및 유럽의 수산 관련 기금 운영사례를 비교한다. 제3절에서는 국내 및 국외 유사 기금의 중점 사업 등 수산발전기금이 참고할 만한 신규사업 후보군을 도출하고, 농업부문 유사 기금과 수발기금 간 재원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4장은 수산발전기금 사업 이용고객, 대출취급기관 및 수발기금 사무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성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조사결과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제시하며, 수발기금 포함 정책자금 이용현황, 여타 정책자금 대비 수발기금 한계점, 수발기금 이용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제5장은 수산발전기금 사업전략 및 기금 사업 이용확대 방향을 제언한다. 제1절 기본 방향에서는 앞의 국내외 유사 기금 사례와 현장 관계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종합 정리하고, 수산발전기금 비전,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언한다. 제2절은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분야를 필요성과 주요내용 중심으로 서술하며, 신규재원의 경우 대략적인 예산 산출액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제3절은 수발기금 사업 운영 방향으로서 기금 사업의 선택과 집중, 기존 고객 사후관리 강화, 사업 공고 시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을 제언한다.

제 2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정부 수산정책 방향 및 수산발전기금 현황

제 1 절 국정 비전 및 수산정책 방향

제 2 절 수산발전기금 현황

제 3 절 시사점



제 1 절 | 국정 비전 및 수산정책 방향

1. 국정 비전 및 목표

2022년 3월 출범한 신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아래의 6가지 국정 목표를 수립하였다.

-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아울러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및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수발기금은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설치되었다. 즉, 기금 운영에 있어서 국가 운영 철학인 국정과제와 수산정책 방향과의 부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해양 환경, 어촌 활력, 수산업 경쟁력, 어업인 복지, 해양 신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살펴보고, 수발기금 사업에 기반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수발기금 사업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110대 국정과제에서 과제명에 해양 환경 및 어촌 등이 직접 언급된 것은 ‘해양 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41번)’,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73번)’ 과제가 있다. 비록 2건에 불과하지만 과제의 범위는 바다 환경, 섬지역 교통 확충, 수산산업 경쟁력 및 어업인 복지 강화, 관광산업 등 매우 포괄적이다.

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국정과제 41)

(1) 과제의 목표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진한 국가해양력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2) 과제의 주요내용

‘해양영토 수호 및 확장’, ‘해상교통관제 강화’, ‘섬 주민 이동권 증진’, ‘공간 관리 및 연안안전 강화’, ‘청정 해양환경 조성’이며, 수발전기금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청정 해양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청정 해양환경 조성’ 사업은 갯벌 및 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등 해양쓰레기 예방·수거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3) 수발전기금 관련 사업 및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수발전기금 경상사업 중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사업이 있고 이들 사업은 41번 국정과제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국정과제 73)

(1) 과제의 목표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 개선,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2) 과제의 주요내용

‘어촌 활력제고’ 사업은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및 어업인의 소득을 제고하는 것으로 '23년부터 어촌 생활권을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및 소규모 어가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및 단가 확대를 추진한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아울러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를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한다.

‘어업인 복지강화’ 사업은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25)하고 작업재활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해양 신산업 육성’ 사업은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25),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3) 수발기금 관련 사업 및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국정과제 73번과 관련하여 현재 수발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⁵⁾이 존재한다. 향후 신규사업 분야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방사능검사장비 지원’, ‘원산지 및 이력제 참여 가공유통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해양바이오·레저관광 창업투자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금의 용도에 규정되어 있는 ‘어선원 복지증진’과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수산업과 어업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사업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2. 수산업 거시환경 및 정책 방향⁵⁾

1) 수산분야 대내외 여건변화

(1)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증가 및 정부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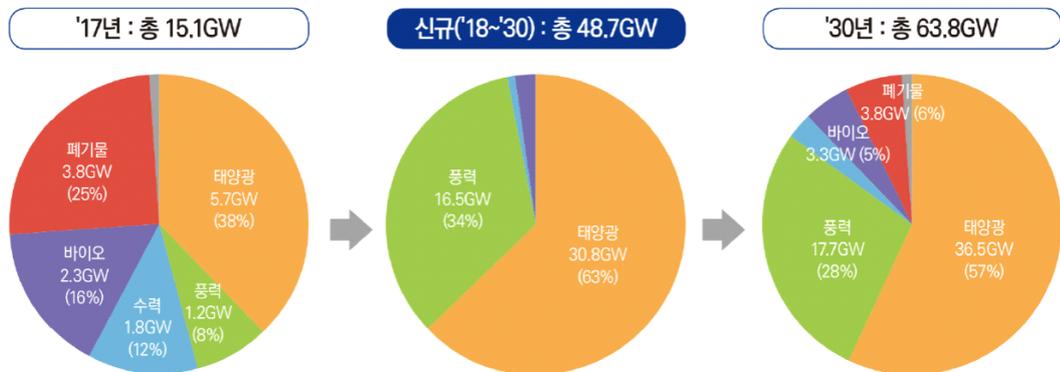
가. 파리협정 채택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5.11.30.~12.11)에서 파리협정(2015.12.12)을 채택함으로써 당사국(195개국)은 CO₂ 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했고,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에너지 효율성 강화 등 저탄소 정책 시행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분야도 탈산소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2020.10)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을 수립한 바 있다.

5)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의 주요 내용을 기본으로 통계청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수치의 현행화 실시. 이하에서 동일 적용

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정부는 2017년 수립한 동 계획을 통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과거 폐기물 기원의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30.87GW), 해상풍력(12GW), 육상풍력(4.5GW) 등 신규설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전후로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확대됨과 동시에 발전사업 허가 및 해역 관리의 조율, 수산업과 해양환경 영향, 이해관계자 갈등 등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수산단체, 지역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및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 및 의식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참조

[그림 2-1] 기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2)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 협력 및 저감정책 강화

가. 국제사회는 해양폐기물을 기후변화에 준하는 중요 현안으로 인식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해 국제규범 마련 등 국제공조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구체적으로 G7(2015) 해양폐기물 대응을 위한 실천계획, G20 정상회의

(2017) 해양폐기물 행동계획, G20 환경장관회의(2019)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이행체계, G20 정상회의(2019)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추가 발생량 제로화를 위한 ‘오사카 블루비전’ 등이 대표적이다.

나.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 강화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제정(2007) 이후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2019년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해양폐기물 관련 내용을 이관하였고,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부유·침적·해안쓰레기 등 유형별 관리주체,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이는 해양오염과 선박사고의 중요 원인인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 폐어구 및 해양플라스틱 배출 저감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3) 어촌지역 소멸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가. 어가수 및 어가인구의 지속적 감소, 65세 이상 비중 지속적 증가
지난 10년간 어가수와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어업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어가수는 60.3천호에서 2019년 50.9천호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43.1천호로 5만호가 붕괴되었고 2022년은 42.5천호를 기록했다.

2013년 기준 어가인구는 147.3천명에서 2019년 113.9천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97.1천명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졌으며 2022년은 90.8천명이었다.

2013년 기준 65세 이상 비중은 29.9%에서 2019년 4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36.0%로 감소하였지만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하여 2022년에 44.2%를 기록하였다.

〈표 2-1〉 지난 10년간 어가수, 어가인구 및 65세 이상 비중

(단위 : 천호, 천명,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어가수	60.3	58.8	54.8	53.2	52.8	51.5	50.9	43.1	43.3	42.5
어가인구	147.3	141.3	128.4	125.7	121.7	116.9	113.9	97.1	93.8	90.8
어가인구 고령인구 비율	29.9	32.2	30.5	32.5	35.2	36.3	44.7	36.0	40.5	44.2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나. 어촌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및 삶의 질 저하, 섬지역 특히 심각 어촌지역은 어가인구의 고령화, 일자리 및 소득기회 부족, 각종 생활서비스 열악 및 쓰레기 문제 등으로 삶의 질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섬, 어촌, 농촌, 도시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섬(3.8), 어촌(4.9), 농촌(5.7), 도시(6.1)의 순서를 보였고,⁶⁾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과 어촌 등 국토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섬과 어촌지역에 대한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지원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와 함께 수산물 가격안정대책 필요

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및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우려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초대형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폐쇄작업을 진행 중이다. 방사능이 유출된 원자로 내에는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어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매일 발생하였고, 이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후 원전부지

6) 박상우(2021.3.3.), '2021 어촌사회 전망과 이슈'. 2021 해양수산전망대회 발표자료 참조

내 탱크(1,066개)에 보관 중이다(23.3. 기준 133만톤). 하지만 보관 탱크 용량 부족으로 일본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2021.4.13.) 및 해양방출을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착수(2022.8.4.)한다. 해저터널은 2023년 6월 26일 완공되었고, 2023년 8월 24일 13시를 기점으로 방류를 개시했다.

정부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국민 수산물 안전 및 소비위축 대응을 위해 해양방사능 감시 및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강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 가격지지와 관련, 수발기금 경상사업 중 비축사업, 용자사업 중 우수 수산물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정부는 비축사업 예산(2022년 1,085억원 → 2023년 1,750억원)과 수산물수매지원 예산(2022년 852억원 → 2023년 1,153억원)을 증액하였다. 하지만 보다 실효적인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비축사업과 수산물수매지원 외에 우수수산물 지원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의 예산 증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나. 수산물 산지유통시설 위생화 및 온라인거래 맞춤형 상품개발 필요
수산물 산지위판장 222개소 중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전체의 21개소⁷⁾에 불과하다. 산지위판장 중 66개소는 시설 연수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위생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일부 위판장에서는 바닥경매로 인해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수산물은 식품학적 특성상 선도유지 한계로 온라인 유통에 제약이 많다. 참고로 2021년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31조2,476억원이며, 2022년에는 36조 1,050억원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도 2022년 기준 7조9,817억원으로 2021년 거래액인 7조1,164억원보다 약 12% 증가했으나 대부분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그치고 있다. 즉, 부패속

7) 수산물 산지위판장 222개소의 65%인 144개소는 냉동·냉장·제빙·저빙·오페수 처리시설 등 5가지 위생시설 중 1개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21개소의 위판장만 위생시설 5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음

도가 빠른 수산물의 경우 냉동 및 활어(전복, 꽃게 등) 품목 일부를 제외하면 신선화나 선어 제품의 온라인 배송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5)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 및 어선 노후화 심각

가.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 이하, 생산금액 4조원으로 정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3년을 기준으로 100만톤 이상을 유지해오다가 기후 변화와 연근해 자원량 감소 등으로 2016년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를 기록 한 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고, 2022년에는 88만톤으로 지난 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4조1,259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 4조1,504억원에서 2022년 4조370억원으로 1.1천억원 이상 감소했다. 즉,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이 4조원으로 정체 상황에서 유류비 및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른 어업경비 인상을 고려하면 연근해어업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 연도별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2
생산량	1,044,697	1,058,319	926,941	911,852	942,875	887,239
생산금액	3,747,606	3,702,306	4,014,055	3,957,149	4,150,427	4,036,954

주 :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부터 100만톤 이하(907,580톤) 기록하였고, 2018년에 1,011,536톤으로 100만톤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연근해어선 노후화로 조업 안전성 및 효율성 저하

연근해어선의 노후화 비율은 선령 21년 이상이 2013년은 12.2%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32.5%로 급증하였다. 어선 노후화는 단순히 에너지 효율 저하 등 조업 실적 및 어업경영의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선원의 선내 근로환경 열악으로 근무만족도 저하와 어선원 취업 기피 심화,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6) 해조류 중심의 양식산업, 어류양식 경영비 상승 및 높은 폐사율로 경쟁력 저하

2022년 기준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총 226.8만톤이며, 이 중에서 고부가가치 품종인 양식어류 생산량은 9.1만톤으로 4.0%에 불과하다. 반면 해조류 생산량은 매년 60% 내외, 패류 생산량은 30% 내외로 양식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류양식장의 연평균 폐사율은 대략 20% 수준이지만, 질병 확산 시 폐사율은 30~50%까지 상승한다. 아울러 고정 경비(종묘비, 사료비, 인건비, 광열비 등)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라 어류양식어가의 평균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3〉 연도별 양식어가 어업경영비 지출 현황(평균치)

(단위 : 천원, %)

구 분	2018	2020	2021	2022
양식어업 경영비 지출	28,185	32,566	35,124	38,104
종묘비	6,720	7,915	9,493	9,708
물품비(사료비 등)	3,064	3,235	4,262	5,199
노무비	7,315	8,883	8,242	9,527
광열비	2,438	2,805	3,294	4,077
어구구입 등	2,215	2,088	1,987	2,182
이 하 생 략				

자료 : 통계청,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참조

2) 정부 수산정책 추진 방향

(1)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육해상 통합 환경관리 체계 구축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선박 및 항만 등의 분야에서 친환경적 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며, 이를 단순히 규제가 아닌 새로운 산업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해양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후 해양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의 수용성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양쓰레기 및 연안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도 문제다. 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해양쓰레기는 물론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상과 해상의 통합 환경관리 구축이 중요하다.

(2) 지역소멸 위기인 어촌섬·연안 지역의 정주여건 강화와 소득 제고 노력

어촌과 섬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 등 사회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인구감소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어촌지역의 주력산업인 어업에 있어서도 어선의 노후화, 재래적인 어업 및 양식방법 등으로 어가소득이 낮아 젊은 세대들의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연안지역의 침식은 계속되고 있고, 지진, 슈퍼태풍, 해일 등의 대형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연안지역 주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과 어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의 지속적·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정책당국 및 지역공동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어업 및 양식업 전반에 걸쳐 산업 경쟁력 및 수산물 위생정책 강화 필요

연근해어업생산량이 2022년 기준 88만톤 수준으로 급감했고, 연근해어선의 노후화와 여전히 높은 어선세력으로 인해 어업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에 TAC 제도 등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법규준수 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양식산업 역시 어류양식장의 높은 폐사율과 해조류 등에 편중된 양식품목, 사료값, 인건비, 전기료 등 고정경비의 지속적 인상에 따른 어업경영 악화 등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료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와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즉, 수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스마트 양식 기술 보급, 어선 및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수산가공기술 개발, 디지털 유통 및 거래구조 확립 등의 수산업 미래 산업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원산지 및 이력표시제를 강화하고, 유통단계별 방사능 검사 확대를 통해 대국민 수산물 안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위생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수발기금의 비축사업 외에 우수수산물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 자금은 수산물 가격지지 기능을 하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규모도 확대되어야 한다.

3. 수산업·어촌부문 핵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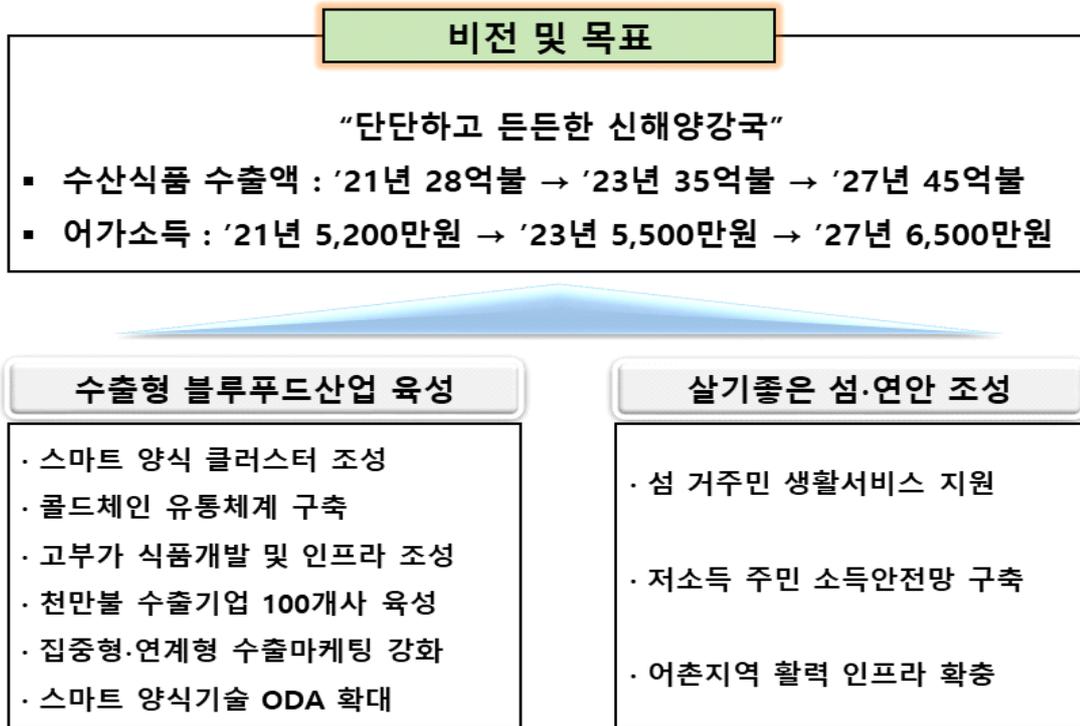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수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을 비전으로 발표하였다. 아울러 수산업·어촌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목표를 보면 수산식품 수출액은 '21년 28억불에서 '27년 45억불로 확대, 어가소득은 '21년 5,200만원에서 '27년 6,5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수산업·어촌 분야의 핵심과제는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6개 세부과제)’,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3개 세부과제)’ 등 2개 부문이다.

첫째,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의 세부과제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콜드체인 유통체계 구축’, ‘고부가 식품개발 및 인프라 조성’,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집중형·연계형 수출마케팅 강화’, ‘스마트 양식기술 ODA 확대’ 등 6건이다.

둘째,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의 세부과제는 ‘섬 거주민 생활서비스 지원’, ‘저소득 주민 소득안전망 구축’, ‘어촌지역 활력 인프라 확충’ 등 3건이다.

아래 그림은 수산업·어촌 부문의 비전 및 목표, 부문별 핵심 추진과제를 도식화한 것이다.



자료 : 해양수산부(2023)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및 작성

[그림 2-2] 수산업·어촌 부문의 정책 비전 및 핵심 추진과제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수발기금의 융자사업 분야 신규사업 발굴이나 기존 사업의 지원 확대를 위한 논리개발에 도움이 되므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사업

(1)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민간 투자 기반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6개소 조성한다.⁸⁾ 이는 지역대학, 기업, 청년 창업인 등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테스트베드와 유통·가공 등 연관산업을 집적한 배후부지로 조성한다.

아울러, 굴, 전복, 연어 등 우량종자 개발과 최적 생육 알고리즘을 확보한다.

(2)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 구축

노후 위판장 100개소(’23, 6개소)에 저온·친환경, 위생 가공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위판장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유통 전 과정(입고·선별·경매·포장)에서 실내온도 10℃ 이하를 유지하고, ’27년까지 연근해산의 80%를 저온 환경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으로 교체(90만개)하고, 저온차량을 보급한다.

(3) 최신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가공식품 개발 및 인프라 조성

가정 간편식(HMR), 상온 유통(어묵) 등 고부가 식품 개발(’22~’24, 105억원)을 지원한다. 가치소비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식품⁹⁾ 기술을 개발하고, ESG 경영 목적 투자기업과 연계하여 제품을 상용화(~’27, 10종)한다.

8) 부산(’23, 연어), 경남(’24, 바리류), 전남(’24, 새우), 강원(’24, 연어), 경북(’25, 연어), 제주(’26, 넙치)

9) 해조류를 활용한 대체 수산물, 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수산 배양육 등

권역별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26, 목포·부산) 및 IoT 기반 스마트 가공 종합단지 조성(~'26, 새만금), 김 산업 진흥구역을 지정('23.2., 3개소)한다.

(4) 블루푸드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성장 사다리 바우처¹⁰⁾ 제공으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육성한다. 공동물류센터 확대('22, 23개국→'23, 25개국), 무역지원센터('22, 7개국) 운영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가칭)수산식품 수출 원팀'¹¹⁾을 가동한다.

(5) 블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형·연계형 마케팅 강화

해외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 소비시즌(美 블랙프라이데이, 中 광군제) 연계 할인행사인 '(가칭)K-씨푸드 글로벌 위크'를 개최한다.

한류를 테마로 부처간 협업사업¹²⁾을 통한 유망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패션 의류, 농식품, 영화 및 미디어 등) 연계 마케팅을 강화한다.

(6)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 ODA 및 국제협력 확대

알제리(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¹³⁾ 양식 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 및 열대 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베트남 맹그로브숲 패류 양식¹⁴⁾, 인도네시아 고부가가치 어류(나폴레옹 피쉬) 등 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기술 ODA 실시 및 신규 ODA 분야를 추가 발굴¹⁵⁾한다.

10)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마케팅, 국제인증 취득 지원(114개사, 기업별 최대 2.2억원)

11) 해수부 주관하에 수협, aT,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회, KMI 등 수출 지원기관 참여

12) 해외홍보관 운영, 한류마케팅 지원, 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등

13) 물고기의 배설물을 미생물이 섭취하고, 미생물이 성장하면 이를 물고기가 섭취하는 방식

14) 해수부-산림청 합동 ODA 사업으로 맹그로브숲 주변에 친환경 패류양식 지원

15) 물 부족국가를 대상으로 아쿠아포닉스(양식+수경 식물), 해수온도 상승국가를 대상으로 고온에 강한 어종 양식 지원 등

2)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사업

(1) 소외된 섬 거주민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그동안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온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40개) 제로화('23, 10개) 및 중단 우려 항로의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35→40개, '23, 198억원)한다.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 할증료(건당 평균 5천원)를 경감('23, 65억원)한다.

(2) 어촌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안전망 구축

수산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규모 어가(약 2.2만호) 및 어선원(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직불제(가구당 연 120만원)를 신규 도입한다.

어촌생활돌봄 활동비와 연금 보험료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실시(만 45세이상, '23, 1,800명)한다.

(3) 어촌지역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 생활(빈집 리모델링, 헬스케어), 안전(방파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¹⁶⁾한다.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촌·어항 활력펀드'를 조성('23, 계획 수립)하고, 어항시설 내 업종 규제를 개선한다.

16) 5년간('23~'27) 총 300개소 3조원 / 유형별로 개소당 50~300억원 지원

제 2 절 수산발전기금 현황

1. 수산발전기금 일반 개요

1) 수발기금의 주요 연혁

수산발전기금은 1999년 9월 7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1년 7월 31일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용을 개시하였다.

2005년 1월 1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 수산분야자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되면서 3,694억원의 조성실적을 달성하였다.

2009년 4월 22일에는 수산발전기금 근거법이 「수산업법」으로 변경됐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수산발전기금은 자산 1조원을 달성하였다.

2015년 12월 23일 수산발전기금의 근거법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바뀌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산발전기금 조성실적은 9,936억원이다.

2) 설치 근거 법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기금의 설치)에 의거,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한다.

3) 자원 조성 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기금은 아래와 같이 총 16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① 정부출연금
- ②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③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제1항제1호 및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다만, 시·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
- ⑥ 「어촌·어항법」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양여)제1항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 ⑦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 ⑧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 부담금) 및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⑪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⑫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한 경우 그 차입금 또는 차관
- ⑬ 기금운용 수익금 등
- 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제3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 ⑮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비축사업 등)제5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 ⑯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2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기금의 용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금은 아래와 같이 총 15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①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 ② 양식어업의 육성
- ③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용자
- ④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 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8조(가격 예시),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유통협약 및 유통 조절명령, 유통명령의 집행,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

(수산업관측, 계약생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비축사업 등,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 ⑥ 수산물의 보관·관리
- ⑦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 ⑧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⑨ 새로운 어장의 개발(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 협정의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함)
- ⑩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피해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폐업 지원)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 ⑫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 ⑬ 제47조(기금의 조성)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 ⑭ 어선원의 복지증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⑮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5) 기금 관리기관 및 사업지원 절차

(1) 수발기금의 관리기관

수발기금의 운용주체로서 정책수립의 총괄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이 해수부이며, 기금의 수입·지출 관리 등 업무의 위탁운영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정책수행 기관은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사무국이 담당한다.

먼저 정책수립 파트에서 기금관리 총괄기관은 해수부 수산정책과이며,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예산 배정 및 결산을 총괄한다. 사업 지원기관은 해수부 각 사업별 담당과에서 사업별 기금운용계획안 및 시행 지침 수립, 사업주관기관의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정책수행 파트에서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수협중앙회 수발기금사무국이며, 자금운용계획 수립, 수입지출 관리, 여유자금 관리, 기금 결산 및 회계관리를 담당한다. 대출 취급기관은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 사업자 선정, 기금 대출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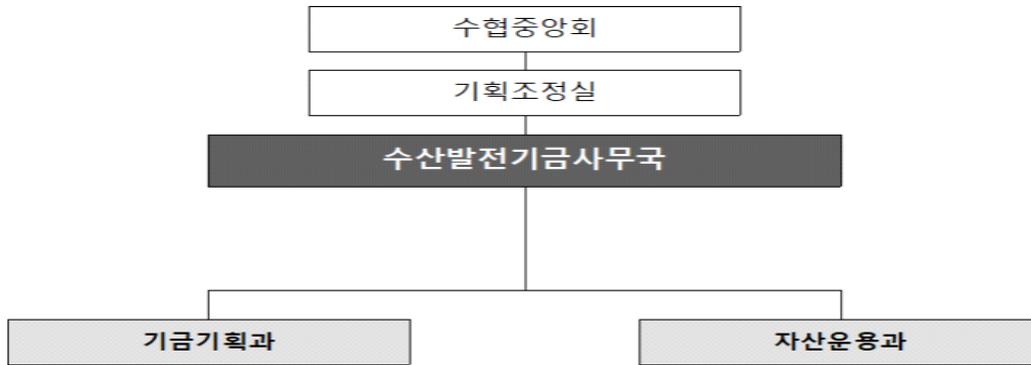
〈표 2-4〉 수산발전기금 관리기관

정책 수립	기금관리 총괄기관	○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예산 배정 및 결산 총괄
	사업 지원기관	○ 해양수산부 각 사업별 담당과(15개과, 55명) - 사업별 기금운용계획안 및 시행 지침 수립 - 사업주관기관의 지도·감독
정책 수행	기금위탁 관리기관	○ 수협중앙회(수산발전기금사무국) - 자금운용계획 수립, 수입·지출 관리 - 여유자금 관리, 기금 결산 및 회계 관리
	대출 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 기금 대출 및 사후관리

자료 : 수산발전기금 제공자료(2023. 3. 기준)

(2) 수발기금 사무국 조직도 및 주요 업무

수발기금 사무국 조직은 수협중앙회 기획조정실 산하에 수산발전기금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사무국은 국장 이하에 2개 과(기금기획과, 자산운용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자료 : 수산발전기금 제공자료(2023. 3. 기준)

[그림 2-3]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조직도

<표 2-5>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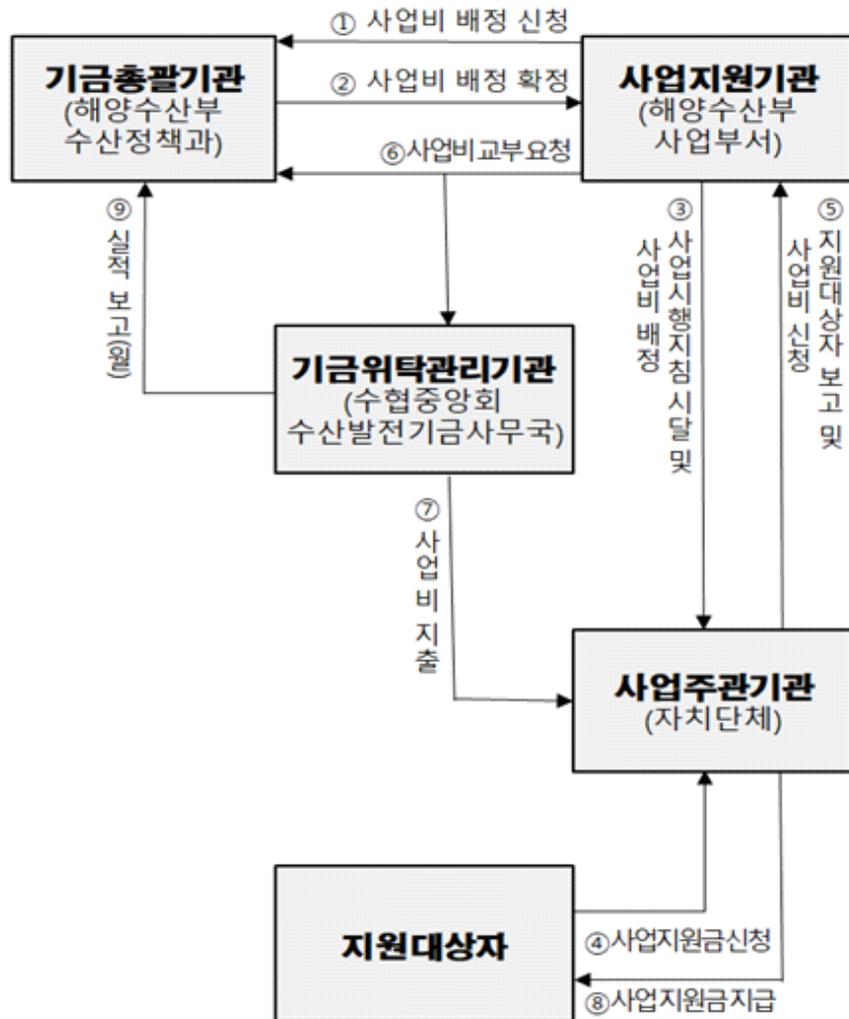
구 분	현 원	담당업무
계	7	-
국 장	1	○ 기금업무 총괄 및 대정부 협력업무
기금기획과	3	○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수입 관리 및 채권관리(수입 고지서 발부 및 환급 관리) ○ 기금 존치평가업무 및 리스크관리(여유자금 및 용자) ○ 서무 행정업무
자산운용과	3	○ 여유자금 운용 및 관리 ○ 용자 약정관리, ○ 기금 사업비(경상, 용자) 지출관리 ○ 기금 결산(수입 및 지출결산, 재무제표 작성) ○ dBrain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자료 : 수산발전기금 제공자료(2023. 3. 기준)

(3) 수발기금 사업(경상용자) 집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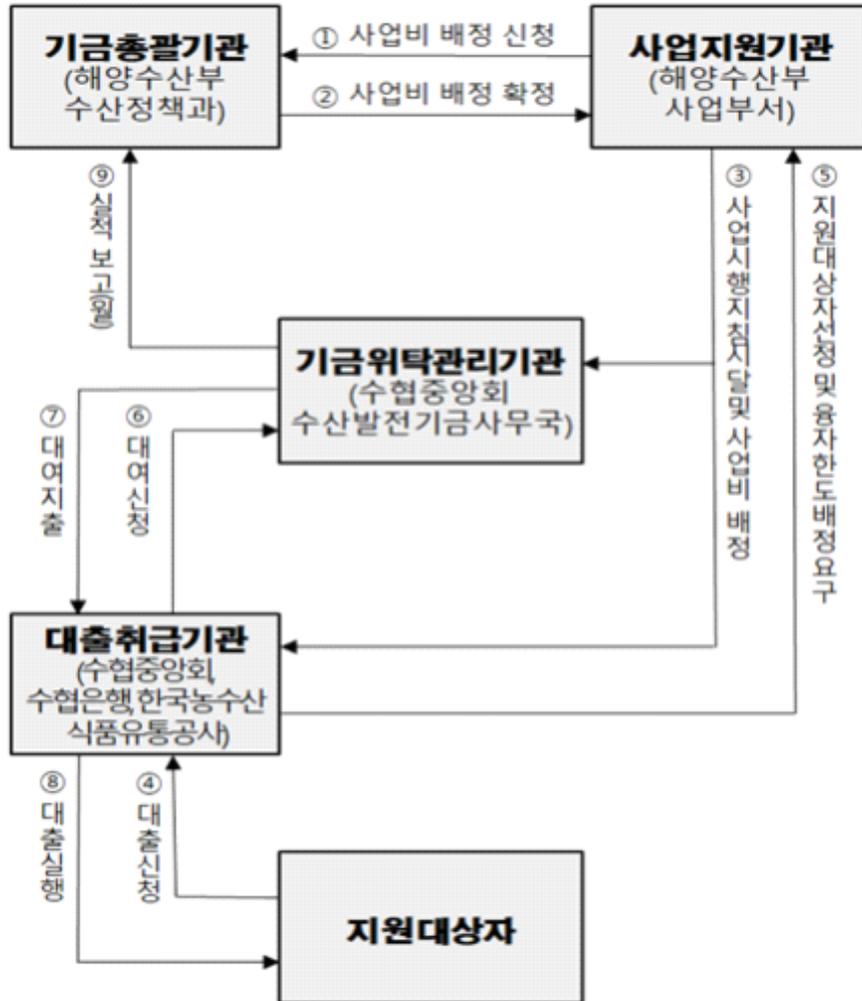
수발기금의 경상사업과 용자사업 지원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경상사업의 경우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용자사업은 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자금을 대출 수요자들에게 용자해주는 형태이다.



자료 : 수산발전기금 제공자료(2023. 3. 기준)

[그림 2-4]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지원절차



자료 : 수산발전기금 제공자료(2023. 3. 기준)

[그림 2-5] 수산발전기금 용자사업 지원절차

2. 수산발전기금 주요 사업

2023년 기준으로 수발전기금 사업을 구분하면 경상사업 12개와 용자사업 8개로 구성된다. 경상사업은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용자사업은 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자금을 대출 수요자들에게 용자해주는 방식이다.

이하에서는 경상사업과 용자사업의 용도(성격)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지원조건 등에 대해 살펴본다.

1) 경상사업 용도에 따른 분류 및 사업별 주요내용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12개의 경상사업이 있으며, 사업 용도에 따른 분류, 사업별 주요내용 및 지원조건 등은 아래의 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표 2-6〉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의 용도별 분류(2023년 기준)

사업 용도	사업명(12개)
해양환경개선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 사업
수산물가격안정	비축사업
	수산물 자조금 지원
수산자원회복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지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직접피해지원	피해보전직불금
	자유무역협정 이행
수산모태펀드 출자	수산모태펀드 출자
원양어선 안전관리	원양어선 안전관리
수산물 유통정보 조사	수산물 유통정보 조사

자료 : 수산발전기금 제공자료를 토대로 표로 재구성 및 작성

〈표 2-7〉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의 주요내용(2023년 기준)

사업명(12개)	사업 내용	지원기준(대상)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을 통하여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배출해역 환경상태 파악	배출해역 모니터링 및 국제회의 지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해양폐기물 수거 및 교육·홍보 등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 사업	연안개발 등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유해생물제거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종 증식·복원 관리 등
비축사업	주 생산시기에 대중성 어종 등을 수매하여 산지 가격을 지지하고, 명절 등 초과수요 발생 시 방출하여 가격 안정 도모	고등어·오징어·명태·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수매
수산물 자조금 지원	생산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정 및 가격안정을 도모	자조금단체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지원	연근해 어선어장 등의 유실/침적 폐기물 수거	연근해 주요어장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시 국내외 대체어장에서 수산자원조사 등 시험조사에 필요한 유류비 지원	일본 EEZ 입어 어업자
피해보전직접불금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 의결한 품목
자유무역협정 이행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영, FTA 협상대비 국내대책 수립	지원센터 1개소 운영, FTA 보완대책 수립 등
수산모태펀드 출자	민·관 합작 투자(Joint Venture) 형태를 통해 수산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원양어선 안전관리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	원양어업 허가어선을 소유한 선사
수산물 유통정보 조사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산물 유통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 연구비 등

자료 :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 용자사업의 용도에 따른 분류 및 사업별 주요내용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양식어업지원,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산장비구입지원 등 8개의 용자사업이 있다. 사업의 범위로 볼 때 직접보조사업인 경상사업에 비해 어업인을 포함하여 유통가공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어업인과 수산업 관계자에 대한 이용 가능 자금의 규모도 크다.

용자사업 용도에 따른 분류, 사업별 주요내용 및 지원대상 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8〉 수산발전기금 용자사업의 성격별 분류 및 지원대상(2023년 기준)

사업 용도	사업명(8개)	지원대상
어업경영자금지원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어업인 ¹⁷⁾ , 조합 등 ¹⁸⁾
	양식어업지원	조합 등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업인
	수산장비구입지원	어업인, 조합 등
품목별경쟁력강화사업	우수수산물지원	어업인, 조합 등
수산물가격안정사업	수산물수매지원	어업인, 조합 등
수산물유통개선	산지 및 소비자 유통자금	산지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해양환경개선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지원	유조선 소유자

자료 : 수산발전기금 제공자료를 토대로 표로 재구성 및 작성

17) 개인,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촌계 등

18) 어업인 외에 수산분야 관련 조합, 법인, 단체 등

〈표 2-9〉 수산발전기금 용자사업의 주요내용(2023년 기준)

사업명(8개)	사업 내용	용자지원 기준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
양식어업지원	배합사료공장 운영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대출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2년상환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급격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저리의 자금지원	대출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연장가능)
수산장비구입지원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통한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대출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 1년거치 7년상환
우수수산물지원	우수 수산물 수출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수산물수매지원	민간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수산물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으로 식품가공산업 육성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위판장 및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지원	대출금리 1.5~3.0%, 1~3년상환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지원	선령 30년 이상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건조(개조) 시 건조(개조)비용 지원	대출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자료 :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3. 수산발전기금 사업실적 분석

1) 수산발전기금 재원조성 실적

최근 3년간 수발전기금 순 조성액 실적을 보면 2020년 10,368억원에서 2022년 기준 9,936억원의 실적을 보여 기금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총 조성액이 2020년 25,629억원에서 2022년 28,943억원으로 증가(연평균 6.3%)한 반면, 사용액(경상지출 등)이 2020년 15,261억원에서 2022년 19,007억원까지 더 많이 증가(연평균 11.6%)했기 때문이다.

〈표 2-10〉 수산발전기금 최근 3년간 재원조성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율
순 조성액(C=A-B)	10,368	9,960	9,936	-2.1
총 조성액(A)	25,629	27,214	28,943	6.3
출연금(정부, 민간출연금)	3,097	3,097	3,097	0.0
농안기금이관	3,694	3,694	3,694	0.0
공자기금예수금	2,210	2,210	2,210	0.0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548	1,552	1,557	0.3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940	1,053	1,165	11.3
수산물공매납입금	3,608	4,146	4,730	14.5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9	9	9	0.0
감척어선매각대금	351	365	399	6.6
어항토지매각대금	63	63	63	0.0
수산물 판매대금	5,138	5,746	6,434	11.9
공유수면 점사용료	861	933	1,039	9.9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110	4,346	4,546	5.2
사용액(B)	15,261	17,254	19,007	11.6

자료 : 수산발전기금 제공자료를 토대로 표로 재구성 및 작성

2) 수산발전기금 수입·지출 실적

최근 3년간 수발기금 수입·지출 실적은 2021년 8,275억원에서 2022년 7,673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계획) 8,35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2023년(계획)에 법정부담금과 수산물매각대금, 면허료 및 수수료 등의 수입이 감소하여 문제다. 이에 기금 재원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정부내부수입¹⁹⁾으로서 공자기금 예탁원금을 약 1천억원 회수하였다.

지출의 경우 일반지출 항목 중 경상사업과 용자사업 모두 2022년 대비 2023년(계획)에 증가하였다. 법정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 편입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사업지원이 곤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원의 대규모 확충이 필요하다.

〈표 2-11〉 수산발전기금 최근 3년간 수입·지출 실적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계	'21년	'22년	'23년 (계획)	계	'21년	'22년	'23년 (계획)
	8,275	7,673	8,352		8,275	7,673	8,352
자체수입	5,929	5,770	5,874	일반지출	5,888	5,650	6,698
법정부담금(수산물공매납입금 등)	634	689	578	사업비	5,875	5,631	6,684
재고자산(수산물)매각대금	608	688	609	경상사업	1,999	2,031	2,653
면허료 및 수수료(공유수면 점사용료)	72	106	62	용자사업	3,876	3,600	4,031
용자원금 회수	4,428	4,128	4,524	기금운영비	13	19	14
기타이자재산수입 등	187	159	101	공자기금 예탁	1,000	1,000	500
정부내부수입	1,040	516	1,526	여유자금 운용	1,387	1,023	1,154
여유자금회수	1,306	1,387	952				

자료 : 수산발전기금 제공자료를 토대로 표로 재구성 및 작성

19)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1,500억원) 및 공자기금 예금이자 수입(26억원)으로 구성됨

3)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지원실적

경상사업 지원실적은 2021년 1,998억원에서 2022년 2,03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계획)에는 2,653억원으로 급증하였다. 참고로 경상사업 예산 중 핵심 사업은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비축사업이다.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가격안정 사전 대응을 위해 비축 사업 예산을 2023년에 전년 대비 약 700억원 증액하였다. 2024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대규모 신규재원 편입이 요구된다.

〈표 2-12〉 수산발전기금 최근 3년간 경상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계획)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총합계(13개)	199,859	100.0	203,056	100.0	265,329	100.0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 시스템구축	1,809	0.9	1,815	0.9	1,821	0.7
해양폐기물정화사업	41,366	20.7	35,642	17.6	36,300	13.7
해양생태계서식처기능 개선복원사업	7,088	3.5	6,004	3.0	12,648	4.8
비축사업	100,844	50.5	108,592	53.5	175,000	66.0
수산물 자조금 지원	3,516	1.8	3,516	1.7	3,165	1.2
연근해어장생산성개선지원	12,102	6.1	15,479	7.6	15,479	5.8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2,133	1.1	2,225	1.1	2,140	0.8
피해보전직불금	664	0.3	1,133	0.6	1,763	0.7
폐업지원금	4,303	2.2	5,665	2.8	사업 폐지	
자유무역협정이행	914	0.5	859	0.4	873	0.3
수산모태펀드 출자	7,000	3.5	7,000	3.4	7,000	2.6
원양어선안전관리	18,000	9.0	15,000	7.4	140	0.1
수산물유통정보조사	120	0.1	126	0.1	9,000	3.4

자료 : 수산발전기금 제공자료를 토대로 표로 재구성 및 작성

4) 수산발전기금 용자사업 지원실적

용자사업 지원실적은 2021년 3,876억원에서 2022년 3,599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계획)은 4,031억원으로 약 500억원 증가하였다. 이는 용자사업 중 규모가 큰 수산물수매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00억원 증가한 영향이 크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용자사업 항목별 비중은 우수수산물지원이 32.8%, 수산물 수매지원이 28.6%,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이 29.4%의 비중을 보여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으며, 정부는 수산물 소비 추이 및 가격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가격하락 등 문제 발생 시 가격지지 기능을 하는 사업으로는 수발기금의 우수수산물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이 있다.

향후 기금의 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표 2-13〉 수산발전기금 최근 3년간 용자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계획)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총합계(8개)	387,608	100.0	359,997	100.0	403,172	100.0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9,450	2.4	10,500	2.9	10,500	2.6
양식어업지원	2,240	0.6	2,240	0.6	2,240	0.6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0	5.2	6,345	1.8	20,000	5.0
수산장비구입지원	2,850	0.7	2,850	0.8	2,850	0.7
우수수산물지원	132,401	34.2	132,246	36.7	132,401	32.8
수산물수매지원	91,389	23.6	85,225	23.7	115,370	28.6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127,836	33.0	118,686	33.0	118,686	29.4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지원	1,442	0.4	1,905	0.5	1,125	0.3

자료 : 수산발전기금 제공자료를 토대로 표로 재구성 및 작성

제3절 시사점

지금까지 신정부의 국정 비전, 수산정책 방향과 수산분야 핵심과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수발기금의 개요,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을 분석하였다. 수발기금은 수산업 경영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하지만 수발기금의 광범위한 용도 대비 최근의 수산분야 거시환경 변화나 신정부 수산정책의 중점 사업을 폭넓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수발기금 사업 지원 및 재원 확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정리한다.

1. 민간이 주도하는 수산정책 실현을 위해 수발기금 용자사업 규모 확대

지난 3년간 수발기금 일반지출 현황을 보면 사업비(경상사업, 용자사업)의 경우 경상사업 비중은 2020년 28.8%에서 2021년 34.0%, 2022년에는 36.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용자사업의 경우 2020년 71.2%에서 2021년 66.0%, 2022년에는 63.9%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사업은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공공과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며 직접적인 재정 이전이 이루어져 예산을 소진시킨다. 반면, 용자사업은 특정 개인의 이익 및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저리의 용자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즉, 기금의 원금손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경상사업에 비해 더 넓은 사업 범위와 지원대상, 더 많은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결국, 수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총사업비에서 직접 보조사업으로 재원을 고갈시키는 경상사업 비중을 낮추는 한편, 국정 기조인 민간주도의 수산정책 실현을 위해서라도 용자 위주의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발기금의 핵심 용자사업(2023년 기준)은 우수수산물지원, 수산물 구매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이다. 이들 사업의 예산규모는 총 용자사업 예산(4,032억원)의 91%(3,665억원)를 차지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판로 확보와 가격안정이 중요한 만큼 동 사업 대한 지원규모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원대상을 현행 어업인, 중도매인,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업체에서 수산식품 판매법인까지 확대하여 용자사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2. 거시 외부환경 변화 및 수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신정부는 국정과제 73번(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통해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향상, 둘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셋째,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이다.

아울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2023.8.24., 13:00)와 관련,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 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어업부문의 심각한 인력난과 열악한 복지문제 개선을 위해 어선원 안전 및 복지 강화를 위한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직업재활보장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동서·남해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 및 바이오뱅크 확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기의 수산정책 방향은 수발기금의 설치 목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수발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산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 및 수산물 유통·수출 관련 시설자금 지원 등은 빠져있다.

이에, 어선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형 연근해어선 건조 지원, 정부의 어촌 소멸 위기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어촌체험관광 등 창업 지원(체험시설장비 구입 자금 등), 수산물유통·수출시설 구축,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검사 장비 등 기자재 구입 지원 등 신규 용자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3. 수산업 성장동력 원천인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재원 확충

최근 3년간 수발기금 순 조성액을 보면 2020년 10,368억원, 2021년 9,960억원, 2022년 9,942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발기금은 어업과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원천이다.

최근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류하였고 정부는 수산물 가격안정화 사업인 비축사업과 수산물수매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향후 이들 사업과 함께 우수수산물 지원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의 지원 규모도 증가된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식품 안전성 확보, 수산물 가공 및 유통기반 조성, 어업분야 인력수급 문제 및 수산물 시장개방 등 수산업을 둘러싼 거시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재의 기금 재원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신규 재원의 발굴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원 발굴의 기준은 단순한 예산 규모 키우기식이 아니라 수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여 재원 편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발기금의 특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의 재원 발굴기준에 따라 어업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재원으로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유어낚시자원부담금 등을 기금으로 편입할 것을 제안한다.

제 3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국내외 유사 기금 사례

제 1 절 국내 사례

제 2 절 국외 사례

제 3 절 시사점



제1절 | 국내 사례

기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 부문의 육성·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산과 별개로 운영하는 자금이다. 2022년도 기금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총 68개이다. 기금을 자금 운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금성(4개) 기금’²⁰⁾, ‘금융성(10개)기금’²¹⁾, ‘사업성(56개)기금’²²⁾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발기금은 사업성기금의 일종이며,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수발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성기금 중에서 농업분야 기금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수발기금 신사업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 사업성기금 중에서 설치 목적상 경영의 지원,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경쟁력 및 육성 등의 단어가 포함된 기금을 추려내었고, 그 결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축산발전기금’이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하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축산발전기금’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으로서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수발기금 사업과의 비교 및 신규사업 가능 분야를 제안토록 한다.

20)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연금성기금은 그 규모가 거대하며 미래에도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인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21)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기금은 융자, 대여, 보증 등의 금융성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와 자금운용 체계가 모두 중요함. 금융성기금에는 기재부에서 분류한 8개 기금 외에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로 간주함(박진규 등 2016)

22) 수산발전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지출할 단기자산배분 등 정책적 사업 집행을 위한 자금운용의 체계성이 중요함

〈표 3-1〉 국내 기금의 자금 운용 목적에 따른 분류

유 형	기금 종류(68개)	비 고
연금성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개
금융성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0개
사업성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기후대응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복권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54개

자료 : 기획재정부 2023년도 기금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 및 작성

참고로 농업분야 사업성기금의 종류는 총 7개(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다.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 설치근거 및 목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설치)에 근거,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68년부터 본격 운용되고 있다.

2) 재원 조달 및 운용 현황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기타여유자금회수 등이며, 대부분 자체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농산물판매수입을 중심으로 조달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표 3-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원 조달 및 운용 규모

(단위 : 억원)

조달(수입)				운용(지출)			
계	'21년	'22년	'23년	계	'21년	'22년	'23년
	22,228	27,668	23,274		22,228	27,668	23,274
자체수입	19,385	21,558	23,274	사업비	21,458	26,663	21,341
법정부담금	580	880	585	경상사업	7,570	11,193	9,043
농산물판매수입	5,828	6,760	7,892	자본지출	17	54	28
용자원금회수	11,603	13,372	13,432	용자사업	13,871	15,416	12,269
용자이자수입	23	13	14	기금운영비	558	559	577
기타수입	1,351	534	1,351	정부내부지출	-	32	152
정부내부수입	1,800	5,898	-	기타여유자금운영	212	413	1,204
기타여유자금회수	1,043	212	-				

주) '21년과 '22년은 실적, '23년은 계획사항임

자료 : 기획재정부 2023년도 기금현황 참조

한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현황을 보면, '22년도 기준 2조 7,668억원이며, 이 중 용자사업에 1조5,416억원(55.7%)을 지원하였다.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경상사업 지원분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경상사업별 사업내용과 지원대상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경상사업 지원분야

사업명(15개)	사업내용	지원대상기관
비축지원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사업	직접사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혜:농산물 생산소비자)
농산물유통 소비정보조사	농산물 수급, 도소매 가격정보 및 유통실태조사 등 정보를 제공하여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조금지원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자조금 단체에 수급조절,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등 지원	자조금단체
농산물생산 유통조절 지원	계약재배 농업인에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사전 면적 조절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채소가격 안정지원), 유통협약 또는 유통조절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유통 협약 명령지원)하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생산자단체, 주산지협의체 등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하역기계화 인프라 구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농식품 유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유통 선진화 촉진을 위해 농식품 유통 종사자에 대한 장·단기 교육·훈련 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표 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경상사업 지원분야(계속)

사업명(15개)	사업내용	지원대상기관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구축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마케팅 지원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홍보 능가 조직화 지원 및 국산 과일, 화훼 등의 소비촉진 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생산자단체
농산물온라인 거래활성화	농산물 온라인 도매유통 시범시스템 개선 지원 및 전국단위 온라인 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과 거래소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농협경제지주, 농업인 등
도매유통활성화 지원	도매시장 관리 및 정가·수의매매 거래시스템 운영 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직거래장터, 온라인직거래 등 직거래 및 新유통 확산을 위한 산지·소비자 인프라 구축 지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종자수매공급	벼·보리·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고품질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수요농가에 공급	직접사업 (수혜:종자생산농가)
한식진흥및음식 관광활성화	한식의 인프라 확충 및 국내외 확산을 통해 한식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	한식재단
농식품글로벌 경쟁력강화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 수출 농가의 조직화 교육,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확대 기반 마련	수출업체
전통발효식품 육성	전통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 김치·장류·전통주 등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 세계화 추진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 : 2023년도 기금현황 참조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경상사업 세부 분야

경상사업 지원 분야로는 총 15개의 사업이 있으며,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가격안정 도모',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상사업 종류는 비축지원,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자조금지원,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농식품유통교육훈련,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농산물마케팅지원,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도매유통활성화 지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종자수매·공급, 한식진흥및관광활성화,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전통발효식품육성이 있다.

지원대상기관의 경우 공익목적의 경상사업 특성상 공공기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자체, 한식재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등)과 생산자단체(농협, 자조금단체, 주산지협의체 등), 기타(수출업체, 농가, 농업인 등)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상사업 지원대상 범위가 공공기관에서부터 생산자단체, 일반 수출가공기업, 농업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다.

(2) 수발기금 경상사업과의 비교

농안기금은 수발기금의 모태이며, '04년에 농안기금에서 수발기금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수발기금 경상사업 중 농안기금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사업이 존재한다. 즉, 비축사업(농안기금 비축지원), 수산물 자조금지원(농안기금 자조금지원), 수산물유통정보조사(농안기금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나머지 사업부문은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성격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한편 농안기금 대비, 수발기금 경상사업에서 지원분야가 빠져있거나 강화해야 할 사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추후 지원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농안기금 경상사업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신규 경상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첫째,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에 대응하는 시설지원사업이 부재하며, (가칭) 수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등의 신규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과 같은 통합 플랫폼이나 온라인거래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즉, (가칭)수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가칭)수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을 신규사업으로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농식품유통교육훈련, 농산물마케팅지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에 대응하는 교육, R&D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부재하므로 (가칭)수산식품유통교육훈련, (가칭)수산물마케팅지원, (가칭)수산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등 신규사업이 요구된다.

〈표 3-4〉 농안기금과 수발기금의 경상사업 비교

구 분	농안기금 사업	수발기금 사업
양 기금의 유사 사업	비축지원	비축사업
	자조금지원	수산물자조금지원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수산물유통정보조사
수발기금의 부재 사업 ²³⁾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가칭)수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가칭)수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가칭)수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농식품유통교육훈련	(가칭)수산식품유통교육훈련
	농산물마케팅지원	(가칭)수산물마케팅지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가칭)수산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23) 농안기금 경상사업과 비교하여 수발기금 경상사업의 신사업명을 ‘(가칭)사업명’으로 제안하며, 이하에서 동일 적용. 아울러 수발기금 신규사업은 선정검토 회의 등을 토대로 제5장에서 세부적으로 정리(사업 필요성 및 주요내용) 예정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자사업 지원분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자사업별 사업내용과 지원대상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다.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자사업 세부 분야

용자사업 지원 분야로는 총 10개의 사업이 있다. 용자사업은 특정 개인의 이익 및 수익 증대를 위한 용자 지원이므로 기금의 원금손실이 없고, 경상사업에 비해 더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지원대상이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용자사업의 종류는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비축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 공용도매시장시설현대화, 인삼특용작물계열화,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도매유통활성화지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이 있다.

용자사업 지원대상기관의 경우 개인 사업체에 대한 용지지원의 특성상 직접 관련자에서부터 일반인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즉, 친환경농산물단체, 친환경물류센터, 생산자단체, 농업인, 지역 농협, 인삼약용작물재배농가,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도매시장 및 공판장, 농식품 수출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 농업 생산자단체에서부터 가공유통업체, 수출업체, 일반 외식업체까지 용자지원대상의 범위가 넓다.

〈표 3-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자사업 지원분야

사업명(10개)	사업내용	지원대상기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직거래 매취자금 등 용자 지원	친환경농산물단체, 친환경 물류센터 등
비축지원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 종료에 따라 매각 대상인 기존 정부비축기지 인수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종합 자금	산지유통조직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원물 확보) 및 노지채소·과실류·과채류의 수급안정자금 (계약재배) 지원	생산자단체, 농업인, 지역농협 등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하역기계화 인프라 구축	지자체
인삼특용작물 계열화	인삼 특용작물 계약재배자금 및 인삼종자 특용작물 구매자금 지원	인삼 약용작물재배농가, 생산자단체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활성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용자자금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도매유통활성화 지원	도매유통 관계자(도매시장, 공판장 등)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및 도매유통활성화 유도	도매시장, 공판장, 생산자단체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직거래 등 농산물 직거래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산지·소비자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지원	사이버거래소,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등
농식품글로벌 육성지원자금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식품외식 종합자금	식품제조·가공·신선편이·전통발효 제조·가공 수출 업체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등 지원	생산자,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역농협 등

자료 : 2023년도 기금현황 참조

(2) 수발기금 용자사업과의 비교

수발기금 용자사업도 농안기금 용자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우수수산물지원(농안기금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수산물수매지원(농안기금 식품외식종합자금),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농안기금 산지유통종합자금, 도매유통활성화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농안기금 대비 수발기금은 수산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며, 대부분 원료 및 어대금 결제자금 용자지원 중심이다.

이처럼 수발기금 용자사업은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에서 농안기금 대비 매우 협소한 편으로 농안기금 용자사업을 참고하여 신규 용자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첫째, 수발기금 사용 용도에 따르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현재 동 사업은 부재하다. 참고로 농안기금의 경우 농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단체 및 친환경물류센터의 직거래 매취자금 용자지원,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직거래 등 농산물 직거래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산지소비지 인프라 구축 용자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수발기금도 (가칭)수산물직거래활성화 용자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 현대화 및 시설 구축 지원과 관련, 농안기금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과 식품외식종합자금을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 생산자,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지역농협 등 일반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원료구매, 운영자금 및 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 중이다. 이에 수발기금도 종합시설지원 성격의 (가칭)수산시설자금 종합지원을 별도 신설하여 생산자,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영어조합법인, 수출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설 현대화 및 구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국산 농수산물의 공공급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수발기금에는 현재 수산물 공공급식 공급망 구축 지원사업이 부재하다. 농안기금의 경우,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사업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게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용자자금을 지원 중이다. 이에 (가칭)수산물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사업을 제안한다.

〈표 3-6〉 농안기금과 수발기금의 유사사업 비교

구 분	농안기금 사업	수발기금 사업
양 기금의 유사 사업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우수수산물지원
	식품외식종합자금	수산물수매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도매유통활성화지원	
수발기금의 부재 사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가칭)수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가칭)수산시설자금종합지원 *수산물 제조·가공·수출업체 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가칭)수산물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2. 축산발전기금

1) 설치근거 및 목적

「축산법」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에 따라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 원활 및 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6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참고로 축산발전기금은 수발기금과 성격상 가장 유사한 기금이다.

2) 재원 조달 및 운용 현황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은 자체수입 및 정부내부수입이 주요 조달원이다.

〈표 3-7〉 축산발전기금 재원 조달 및 운용 규모

(단위 : 억원)

조달(수입)				운용(지출)			
계	'21년	'22년	'23년	계	'21년	'22년	'23년
		10,588	11,154		10,628		10,588
자체수입	5,945	6,292	5,676	사업비	10,256	9,552	9,500
이자수입	6	27	11	경상사업	4,998	4,162	4,116
사업수입	971	781	601	자본지출	688	580	541
융자원금회수	4,855	5,399	4,468	융자사업	4,570	4,810	4,843
융자이자회수	72	60	68	기금운영비	17	17	17
법정부담금	41	25	28	정부내부지출	4	70	201
한국마사회납입금	-	-	500	기타여유자금 운용	311	1,515	910
정부내부수입	4,188	4,551	4,455				
기타여유자금회수	455	311	497				

주) '21년과 '22년은 실적, '23년은 계획사항임

자료 : 기획재정부 2023년도 기금현황 참조

한편, 축산발전기금의 운용 현황을 보면, '22년도 기준 1조 1,154억원이며, 이 중 용자사업에 4,810억원(43.1%)을 지원하였다.

3) 축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지원분야

축산발전기금 경상사업별 사업내용과 지원대상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8〉 축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지원분야

사업명(14개)	사업내용	지원대상기관
축산자조금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축산물판로 확대, 소비촉진,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도모	축산단체
축산물수급관리	· 송아지 거래가격 차액 보전 · 국내원유생산 감소 대비 자금 · 축산물 수급조절 기반 구축 · 질병대비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 잉여원유 조절용 수급조절자금 ·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지원	농가, 지자체, 생산자 단체, 낙농진흥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등
축산물유통정보 실용화	· (실태조사) 유통실태조사, 조사료 통계 관측조사, 가격 조사 등 · (거래증명통합시스템) 축산물 품질·인증·위생 등의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거래증명서류 간소화 · (온라인가격비교플랫폼)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 구축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농협경제지주
축산물유통및 소비촉진제고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 제고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구축	온라인경매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매시장

〈표 3-8〉 축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지원분야(계속)

사업명(14개)	사업내용	지원대상기관
가축개량지원	· 보증씨수소 선발 및 정액공급 · 우수개체 선발 및 저능력가축 도태 지원 · 국내 종계개량과 능력검정소 신축지원 · 우수 꿀벌 품종 보급 지원 등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농가, 대한양계협회
말산업육성지원	· 「말산업육성법」(5개년종합계획)에 따른 말산업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홍보강화 등	지자체, 한국마사회, 농축협, 민간단체 등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 및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등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퇴액비 살포비 등	재단법인 축산환경 관리원, 지자체 등
축산물품질관리	· 소, 돼지의 이력정보 기록/관리 · 국내산 축산물 등급판정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축산물위생안전 검사운영	축산물 안전성검사를 위한 검정장비 및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 21년부터 사업명 변경 : 변경 전) 도축검사운영 → 변경 후)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 등
축산물 HACCP 지원	HACCP 인증 희망농가 등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 지도 경비 지원	농가, 축산물안전관리 인증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 지원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한 공동방역체계 확립, 방역활동 추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혁신밸리 조성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혁신밸리 조성사업 검토 연구 용역 추진	대학, 기업, 연구소, 연구 기관, 농업회사법인 등

자료 : 2023년도 기금현황 참조

(1) 축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세부 분야

경상사업 지원 분야로는 총 14개의 사업이 있으며, ‘축산업 발전’, ‘축산물 수급 원활’, ‘가격 안정’ 등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상사업 종류는 축산자조금,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유통정보 실용화, 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가축 개량지원, 말산업육성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지원, 축산물품질 관리,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축산물 HACCP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 양봉 바이오치유산업혁신밸리조성이 있다.

경상사업 지원대상기관은 공익 목적의 특성상 공공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 축산경제연구원, 지자체,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대학 등)과 생산자단체(농협, 축산단체, 생산자단체, 낙농진흥회, 대한양계협회, 한국 종축개량협회 등), 기타(농가, 농업회사법인, 연구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발기금 대비 축발기금 경상사업 부문의 지원대상 범위는 생산자단체에서부터 일반 기업과 연구기관까지 훨씬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다.

(2) 수발기금 경상사업과의 비교

축발기금은 근거법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로만 보면 수발기금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다. 즉, 「축산법」 제47조에 명시된 축발기금의 용도 중에는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에 제시된 수발기금의 용도에서도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수발기금의 신규사업 특히 양식산업 분야의 신규사업을 모색함에 있어 축발기금의 사업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여타 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

수발기금 경상사업 중 축발기금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사업은 3개 정도다. 수산물자조금지원(축발기금 축산자조금), 비축사업(축발기금 축산물수급관리),

수산물유통정보조사(축발기금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가 있다. 나머지 사업부문은 산업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해 지원 분야 및 지원대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축발기금 대비, 수발기금의 경상사업도 지원을 강화하거나 신규사업으로 발굴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었다.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사업은 수발기금의 수산물유통정보조사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수발기금이 수산물 유통실태조사 연구비 지원에 한정된 반면, 축발기금은 유통실태조사 외에 거래증명통합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가격비교 플랫폼 사이트 구축까지 지원범위와 대상이 더 넓다. 이에 수산물 온라인가격 비교 플랫폼 사이트 구축 등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축발기금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수발기금의 양식분야 신규사업으로서 (가칭)배합사료생산기반확충 및 (가칭)폐사어처리지원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와 매년 발생하는 수산물 위생안전성 문제로부터 대국민 안심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축발기금의 경우, 축산물품질 관리,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등의 사업이 있다. 수산물의 경우 농산물 대비 생산 및 유통과정 중 외부로부터 이물질 오염이나 온도에 따른 변패에 더욱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수발기금에는 수산물 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나 위생방역 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등 교육컨설팅 지원이 부재하다. 이에 (가칭)수산물 품질관리, (가칭)수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등 신규사업이 필요하다.

넷째,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에 대응하는 수산분야 신규사업으로서 (가칭)수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거래(배달음식, 인터넷 쇼핑물을 통한 공동구매, 해외 직접구매 등)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경매 플랫폼구축도 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수발기금의 용도 중에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사업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표 3-9〉 축발기금과 수발기금의 경상사업 비교

구 분	농안기금 사업	수발기금 사업
양 기금의 유사 사업	축산자조금	수산물자조금지원
	축산물수급관리	비축사업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수산물유통정보조사
수발기금의 부재 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칭)배합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가칭)폐사어처리지원사업
	축산물품질관리	(가칭)수산물품질관리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가칭)수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가칭)수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4) 축산발전기금 용자사업 지원분야

축산발전기금 용자사업별 사업내용과 지원대상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다.

(1) 축산발전기금 용자사업 세부 분야

용자사업 지원 분야로는 총 7개의 사업이 있다. 즉, 축산물수급관리, 사료 산업종합지원, 말산업육성지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지원에 대해 용자지원을 하고 있다.

〈표 3-10〉 축산발전기금 용자사업 지원분야

사업명(7개)	사업내용	지원대상기관
축산물 수급관리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오리 민간자율비축 지원	계란공판장개설자 등, 오리계열화사업자
사료산업종합 지원	사료원료 구매자금 및 제조시설 개보수자금 지원	사료제조업등록업체, 사료관련단체
말산업육성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공공시설, 민간시설) 설치·개보수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등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축산농가가 사료구매시 현금거래 등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	축산업등록 농가 법인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농업법인, 비회원조합 등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조사료 생산지원, 전문단지 지원 및 운영자금 지원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산악취개선, 공동자원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농가, 농축협 등

자료 : 2023년도 기금현황 참조

용자사업 지원대상기관은 계란공판장개설자, 오리계열화사업자,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사료관련단체, 축산농가법인, 농업법인, 농업인, 비회원조합, 농축협 및 농가 등 축산 관련 기관이나 농업인생산자단체, 기타 개인 및 비회원조합 등 지원 대상이 다양한 편이다.

(2) 수발기금 용자사업과의 비교

수발기금 용자사업도 축발기금 용자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양식어업 지원(축발기금 사료산업종합지원), 수산물수매지원(축발기금 축산물수급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축산업이나 양식업은 생명을 기르는 산업으로서 공통점이 있으며, 먹이가 되는 사료 기술의 개발은 물론 생산자에게 고품질 사료와 생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근거해 축발기금의 여타 용자사업 중에서 수발기금의 양식업 분야 신규사업으로서 참고할 만한 분야가 있는지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축산물직거래활성화에 대응하는 수발기금 신규사업으로서 (가칭)수산물 직거래활성화 사업추진 검토가 요구된다. 이는 수발기금 용도와도 일맥상통하며, 수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대상을 영어조합법인 외에도 일반 수산물 판매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에 대응하는 수발기금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참고로 양식장 어류의 배설물은 부영양화 등 해양환경 영향을 주는데,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탄소중립을 위해 배합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료구입 비용은 양식어업 경영에 있어서 인건비와 함께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축발기금 사업을 참고하여 (가칭)양식사료직거래활성화 등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축발기금의 가축분뇨처리지원에 대응하는 (가칭)폐사어처리지원에 관한 신규사업이 필요하다. 신규사업의 경우 축발기금 용자사업처럼 약취개선, 공동자원화, 친환경퇴비생산시설 지원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어업인, 생산자 단체, 수협 및 자회사, 비회원조합 관계자(퇴비가공업체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3-11〉 촉발기금과 수발기금의 융자사업 비교

구 분	농안기금 사업	수발기금 사업
양 기금의 유사 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	양식어업지원
	축산물수급관리	수산물수매지원
수발기금의 부재 사업	축산물직거래활성화	(가칭)수산물직거래활성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가칭)양식사료직거래활성화
	가축분뇨처리지원	(가칭)폐사어처리지원

제 2 절 | 국외 사례

본 절은 ‘일본 어업관계 제도자금’, ‘유럽 해양수산물양식기금’을 중심으로 자금의 종류, 용도 및 사용 조건 등을 파악함으로써 수발기금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1. 일본 어업관계 제도자금

어업관계 제도자금은 어업자들의 어선 건·개조, 기자재류, 어업경영, 주거지 기반시설 개선, 승무원 안전확보, 수산가공시설 구축 등 다양한 분야 지원을 위한 저금리 자금이다. 대표적으로 아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어업근대화 자금, 연안어업개선자금, 어업진흥자금, 어업경영유지안정자금 등이 있다.

〈표 3-12〉 어업관계 제도자금의 총괄표(2021.6. 기준)

사용 분야	주요 내용	자금 종류
어선	어선 건·개조 및 구입	어업근대화자금
	어선 엔진 교체	연안어업개선자금, 어업근대화자금
	어군 탐지기, 레이더 등 설치	
	승무원 안전장치 등 설치	
생활환경	급배수 시설, 정화조 등 설치	어업근대화자금
	주택(어업후계자) 취득	
어업경영	조업을 위한 자재 등 구입	어업진흥자금
	급격한 환경 변화로 수입 감소 시 경영 개선	어업경영유지안정자금
	새로운 기술과 생산 방식 도입	연안어업개선자금
수산가공	제조가공시설 등 개량	어업근대화자금

자료 : 일본 수산청 및 후쿠시마현 어업관계 제도자금 홈페이지 자료를 번역하여 표로 재구성 및 작성

1) 어업근대화자금

동 자금은 1969년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어선의 건조 및 개조, 어업 기자재 등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총 7호의 자금으로 구성된다.

〈표 3-13〉 어업근대화자금의 세부 종류 및 주요 용도

자금 종류	자금 용도
1호 자금 (어선 간개조 또는 취득)	어선, 추진 기관, 프로펠러 장치, 발전기, 무선기, 어군 탐지기, 방향 탐지기, 레이더, 자이로 나침반, 조수 장치, 유압 장치 등
2호 자금 (어선어구 보관 및 수리시설 등)	어선어구 보관 및 수리시설, 어업용 자재 보관 시설, 어선용 유수 공급 시설, 수산 종묘 생산 시설, 양식용 작업사, 수산물 처리 시설, 수산물 보관 시설, 수산물 가공 시설, 제빙 냉동 시설, 수산물 등 운반 시설, 수산물 판매 시설, 어업용 통신 시설 등
3호 자금 (어장 개량 및 조성용 기구 등)	어장 개량조성용 기구, 어선 유수 공급용 기구, 수산 종묘 생산용 기구, 양식용 먹이 조절 공급용 기구, 양식 수산물 수확용 기구, 수산물 등 운반용 기구 등
4호 자금(어구 등)	어구, 양식 떼먹, 구획망 양식 시설, 부유식 양식 시설 등
5호 자금 (수산동식물 종묘의 구입육성)	성육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의 어종(전복, 고등어, 새고막, 복어, 역돔 등)에 대한 양식용방류용 종묘 구입 및 육성 자금
6호 자금 (어촌 환경 정비 시설)	어촌 정보 처리·통신 시설(유선 방송 시설 및 유선 방송 전화 시설 포함), 어선원 임시 숙박 시설, 어업 연수 시설, 탁아 시설, 진료 시설, 수도 시설, 가스 공급 시설, 하수도 시설, 지역휴양시설, 어촌센터, 생활안전 보호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7호 자금 (기타 시설)	1~6호 이외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자금으로 어장 개량 조성 시설, 어협 등의 공동이용 선박, 수산물 처리 가공시설, 공해 방지 시설, 해변 등 환경 활용 시설, 어촌 급배수 시설, 어가 주택 자금, 최초 경영 자금, 밀어 감시 시설, 수산업 노동력 확보 시설 등

자료 : 일본 수산청 및 후쿠시마현 어업관계 제도자금 홈페이지 자료를 번역하여 재구성 및 작성

세부적으로 1호 자금은 어선 간개조 및 취득, 2호 자금은 어선·어구 보관 및 수리시설 등, 3호 자금은 어장 개량 및 조성용 기구 등, 4호 자금은 어구 등, 5호 자금은 수산동식물 종묘의 구입·육성, 6호 자금은 어촌 환경 정비 시설, 7호 자금은 기타 시설로서 수산물 처리·가공시설, 어협 등의 공동이용 선박, 어가 주택 자금, 밀어 감시 시설, 공해 방지 시설 등 1~6호 이외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한다.

어업근대화자금의 대출 연이율은 어업자 및 어협 등 단체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적으로 0.2~0.25% 이내이다. 상환기간은 5년~20년 이내이며 거치기간은 2년~3년이다. 즉, 대출 이용 조건이 저금리에 이용 기간도 장기간으로 어업인 및 어협의 다양한 사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매우 유용한 자금으로 판단된다.

〈표 3-14〉 어업근대화자금 종류별 이율 및 상환기간

자금 종류		이율(%)		상환기간(년)		
		어업자	어협 등	어업자	어협 등	거치기간(년)
1호 자금 (어선)	20톤 미만	0.2		20년		3년
	20톤~130톤	0.25		(목선 9년, 기기 10년)		(목선 2년, 기기 3년)
2호 자금 (어선어구 보관 및 수리시설 등)		0.2		15년	20년	3년 (목선 2년, 기기 3년)
3호 자금 (어장 개량 및 조성용 기구 등)				7년	10년	2년
4호 자금(어구 등)				5년		2년
5호 자금 (수산동식물 종묘 구입육성)				5년		2년
6호 자금(어촌 환경 정비 시설)				-	20년	3년
7호 자금 (기타 시설)				12년	15년	2년
				어촌 급배수시설, 특정 어가 주택, 수산업 노동력 확보 시설		
		15년	-	3년		
		최초 경영자금				
		5년	-	2년		

자료 : 일본 수산청 및 후쿠시마현 어업관계 제도자금 홈페이지 자료를 번역하여 재구성 및 작성

2) 무이자 연안어업개선자금

연안어업개선자금은 연안어업자에 대하여 1979년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에 의거 각 도도부현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아래 표와 같다.

〈표 3-15〉 무이자 연안어업개선자금의 세부 종류, 대출 한도 및 상환기간

자금 종류	사용 분야	대출 한도액 (총액)	상환기간 (거치)
작업 생력화기계 등 설치자금	자동조타장치, 원격조정장치, 레이더, 자동항적기록장치, GPS 등	500만엔	7년(1년)
어로작업 생력화기계 등 설치자금	동력식 낚시기계, 방전식 집어등, 어업용 크레인, 어획물 등 처리장치, 해수 냉각살균장치, 어군탐지기 등	500만엔	7년(1년)
보조기관 및 구동기기 등 설치자금	보조기관(동력장치 부착 추진기관 포함), 유압장치 등	500만엔	7년(1년)
연료유 소비절감장치 등 설치자금	추진기관, 정속장치, 발광 다이오드식 집어등	1,300만엔	7년(1년)
신양식기술 도입자금	양식시설, 종묘, 사료 등	1건 400만엔	4년(2년)
자원관리형 어업추진자금	자원관리조치 실시에 필요한 개량 어구 및 어로장비 등	1,200만엔	10년(3년)
환경대응형 양식업 추진자금	양식어장환경 악화방지에 필요한 장비(사료 배합기, 자동급이기 등)	2,000만엔	10년(3년)
승무원 안전기기 등 설치자금	낙상방지용 손잡이, 안전커버장치, 양망기 안전장치 등	150만엔	5년(1년)
구명소방설비 구입자금	구명조끼, 소화기, 레이더트렌스폰더, 소형어선긴급연락장치 등	130만엔	2년/5년(-)
어선 전복 방지기기 등 설치자금	어획물 횡이동 방지장치 등	150만엔	5년(1년)
어선 충돌 방지기기 등 구입자금	레이더반사경, 무선전화 등	120만엔	5년(1년)
어구손괴방지기기 등 구입자금	어구표식(조명부착 부이, 레이더 반사기부착 부이 등)	1인 70만엔, 단체·회사 130만엔	5년(-)

자료 : 일본 수산청 및 후쿠시마현 어업관계 제도자금 홈페이지 자료를 번역하여 재구성 및 작성

동 자금의 설치 목적은 새로운 어업기술이나 어업생산방식, 어업인(어선원 포함)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도입 등 어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안 어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로 연안어업자의 범위는 20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거나 수산동식물 체포 사업자(어선 미사용 및 어구 정치 등), 수산동식물 양식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세부사업의 경우, 총 12개 사업으로서 연안어업자의 작업생력화기계 등 설치 자금, 어로작업 생력화기계 등 설치자금, 보조기관 및 구동기기 등 설치자금, 연료유 소비절감장치 등 설치자금, 신양식기술 도입자금, 자원관리형 어업추진 자금, 환경대응형 양식업 추진자금, 승무원 안전기기 등 설치자금, 구명·소방설비 구입자금, 어선 전복방지기기 등 설치자금, 어선충돌방지기기 등 구입자금, 어구 손괴방지기기 등 구입자금이 있다.

동 자금의 대출 한도액은 1인당 70만엔~2,000만엔이며, 대출 이율은 무이자다. 상환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 거치기간은 1년~3년 이내이다.

3) 어업진흥자금

동 자금은 어업자 등이 어업 경영상 필요시, 단기적(1년 이내 상환)으로 융통하는 운용성 자금이다. 세부적으로는 어업경영자금과 수산물 판매안정축진자금이 있다.

어업경영자금은 어업자가 필요로 하는 조업자재 등의 구입자금이다. 수산물 판매 안정축진자금은 시장을 개설하는 연근해조합과 가공조합이 시장에서의 판매 및 가공 원료 구입비 등을 청산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표 3-16〉 어업진흥자금의 종류별 이율 및 상환기간

자금 종류	대출 이자율	상환기간	대출 한도액
어업경영자금	1.70% 이내	1년	어업종류에 따라 300만엔~3,500만엔 3억엔
수산물판매안정축진자금	1.80% 이내		

자료 : 일본 수산청 및 후쿠시마현 어업관계 제도자금 홈페이지 자료를 번역하여 재구성 및 작성

대출 이율은 어업경영자금은 1.70%, 수산물 판매안정촉진자금은 1.80% 이내다. 대출 한도액은 어업경영자금의 경우 어업종류에 따라 300만엔~3,500만엔, 수산물 판매안정촉진자금은 3억엔 이내로 한다.

4) 어업경영유지안정자금

동 자금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어업인, 수산물 시장개방 등 어업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어업자들이 대상이며, 그 경영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채무 정리 지원자금이다. 본 자금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사에 의해 어업경영재건계획을 인정받아야 한다.

대출 금리는 해안어업자는 0.2% 이내, 월양어업자는 0.7% 이내이며 상환기간(거치)은 10년(3년) 이내이다.

대출한도는 어선어업 톤수별로 차이가 있으며 30톤 미만의 4,000만엔부터 500톤 이상의 4억엔까지 다양하다. 양식업의 경우 4,000만엔이며, 정치망어업의 경우 소형은 4,000만엔, 대형은 8,000만엔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표 3-17〉 어업경영유지안정자금 사용 분야별 이율, 상환기간

자금 사용 분야		대출 한도액	상환기간(거치)	대출 이자율
어선어업 톤수별	30톤 미만	4,000만엔	10년(3년)	해안 0.2%, 월양 0.7%
	30~50톤 미만	7,000만엔		
	50~100톤 미만	1억2,000만엔		
	100~200톤 미만	1억5,000만엔		
	200~500톤 미만	2억4,000만엔		
	500톤 이상	4억엔		
양식업		4,000만엔		
정치망어업	대형	8,000만엔		
	소형	4,000만엔		

자료 : 일본 수산청 및 후쿠시마현 어업관계 제도자금 홈페이지 자료를 번역하여 재구성 및 작성

2.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EMFAF)

1) 기금의 개요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EMFAF : 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은 EU 예산에서 재원을 조달하며,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된다. 동 기금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달성하고 해양 생물 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수산물 공급을 통한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의 성장 및 바다 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동 기금의 사용 용도, 운용 전략, 전체 예산, 우선순위 사업분야(4분야) 순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의 사용 용도

동 기금은 수생 및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관리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세부적인 용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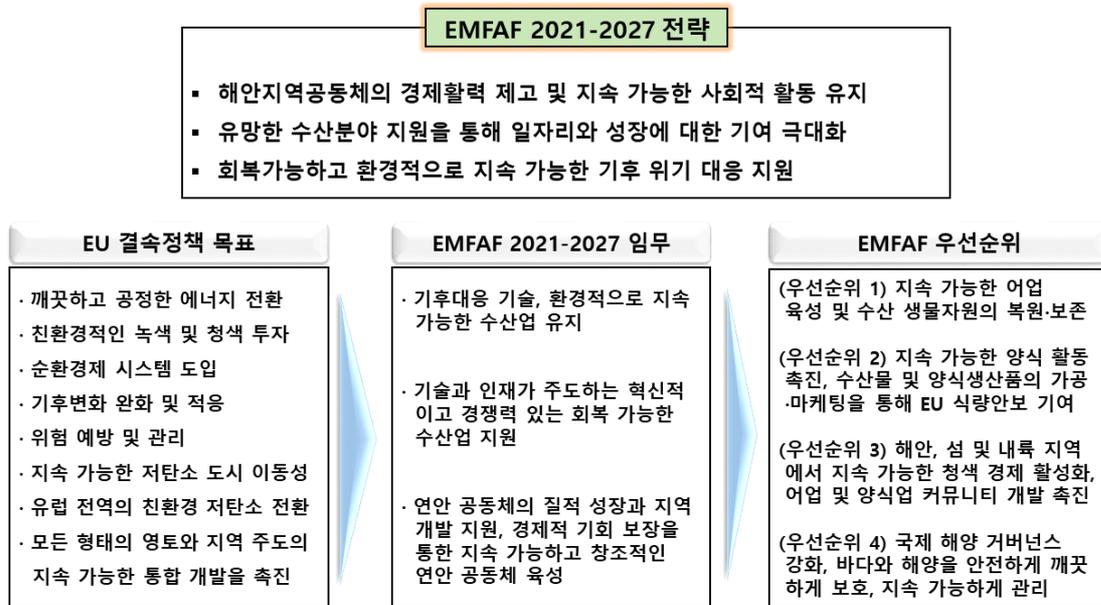
① 지속 가능한 저탄소 어업으로의 전환, ② 해양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③ 유럽 소비자에게 양질의 수산물 공급, ④ 소규모 연안어업과 관련하여 어업부문의 매력화, ⑤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품목 개발, ⑥ 어업 및 양식업 분야 기술개발과 근로조건 개선, ⑦ 연안 공동체의 경제적·사회적 활력 제고, ⑧ 지속 가능한 청색경제의 혁신, ⑨ 안전한 해양 공간을 위한 해양안보 강화, ⑩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바다를 위한 국제협력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2)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2021-2027)의 전략

동 기금의 전략, EU 결속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금의 임무 및 우선순위 사업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운용 전략은 해안지역공동체의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활동 유지, 유망한 수산분야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회복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 위기 대응활동을 지원한다.

상기 운용 전략은 EU 결속정책의 목표와 부합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금의 임무와 우선순위 사업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자료 :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의 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EMFAF) 자료를 번역하여 재구성 및 작성

[그림 3-1]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의 운용 전략(목표, 임무, 우선순위 사업) 종합

이 중에서 기금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첫째, 기후대응 기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회복 가능한 수산업을 지원한다. 셋째, 연안 공동체의 질적 성장과 지역 개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기회 보장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창조적인 연안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우선순위 사업의 경우, 아래의 해양수산양식기금의 우선 순위 사업분야(4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 전체 예산

해당 기간(2021년~2027년) 동안 총 예산은 61억8,000만유로(8조8,116억원)²⁴⁾이며, 세부적으로 공유관리²⁵⁾ 53억1,100만유로(7조5,725억원)와 직접관리²⁶⁾ 7억9,700만유로(1조1,363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2) 해양수산양식기금의 우선순위 사업분야(4분야)

해양수산양식기금의 우선순위 사업분야(4분야)는 아래와 같다.

(우선순위 1) 지속 가능한 어업 육성 및 수산 생물 자원의 복원·보존

(우선순위 2) 지속 가능한 양식활동 촉진, 어업 및 양식 제품의 가공·마케팅을 통해 EU의 식량 안보 기여

(우선순위 3) 해안, 섬 및 내륙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청색 경제 활성화, 어업 및 양식업 커뮤니티의 개발 촉진

(우선순위 4) 국제 해양 거버넌스 강화, 바다와 해양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24) 2023년 6월 26일 환율 기준

25) EU 예산과 EU 국가가 공동 자금을 조달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26) 위원회에서 직접 제공

(1) 해양수산양식기금의 우선순위 1

동 기금의 ‘우선순위 1’은 지속 가능한 어업 육성 및 수산 생물 자원의 복원·보존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한다.

〈표 3-18〉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1’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

구체적인 목표	세부 내용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 어획 방지 조치 · 선상에서의 어획물 품질 개선 조치(어획물 고부가가치화 및 이력 추적 강화) · 신규 어선어업 진입자 지원 조치 · 어선원의 건강, 안전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 · 어업환경 변화의 경제적 및 생물학적 영향 평가 조치 등
어선 엔진 교체 및 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CO ₂ 배출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조치 등
지식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신뢰도 제고, IUU 어업 근절 등 효율적인 어업 통제 및 집행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맞는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개발 조치 · 12m 미만 선박에 대한 조업 노력 및 공간적 분포 수집 등 데이터 확보 조치 · 모든 조업활동의 효과적인 통제, 시행 및 검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 수산자원 평가, 혼획 및 생태계 모델링에 대한 자문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조치 등
수중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복원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및 지속적 확대를 위한 조치 · 기후 행동에 대한 대처 및 어업 패턴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대응 조치 · 해양생물 다양성, 서식지 손실, 기후변화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인지도 제고 조치 · 생물 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어구 사용 경감 조치 · 어업활동의 적절한 통제 및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 어업 및 양식업으로 인한 외래종의 유입확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 등

자료 :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의 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EMFAF) 자료를 번역하여 재구성 및 작성

(2) 해양수산양식기금의 우선순위 2

‘우선순위 2’는 지속 가능한 양식 활동 촉진, 어업 및 양식 제품의 가공·마케팅을 통해 EU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표 3-19〉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2’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

구체적인 목표	세부 내용
지속 가능한 양식 활동 장려, 특히 양식 생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보장하는 어장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생물 성장 촉진을 위해 향상된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는 조치 · 해양 서식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국가 해양 공간 계획 과정에서 양식업의 참여를 조율하기 위한 조치 · 해양쓰레기 절감, 회수 및 처리를 위한 조치 등
수산 및 양식 제품의 마케팅, 품질 및 부가가치 증진, 수산물 가공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를 위해 제품 차별화 조치 · 어업 및 양식업 관련 물류 혁신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투자 관련 지원 조치 · 원자재 가치 증진 등 가공 부문 발전을 지원하는 조치 · 가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 규모의 경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 · 생산자 조직의 생산 및 마케팅 계획 구현을 지원하는 조치 · 기존 시장 외에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조치 등

자료 :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의 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EMFAF) 자료를 번역하여 재구성 및 작성

(3) 해양수산양식기금의 우선순위 3

‘우선순위 3’은 해안, 섬 및 내륙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청색 경제를 활성화 하고, 어업 및 양식업 커뮤니티의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 분야를 지원한다.

〈표 3-20〉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3’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

구체적인 목표	세부 내용
해안, 섬 및 내륙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청색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업 및 양식업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과 해안 지역 공동체의 소득 다양화를 위한 경제적 조치 · 해안 지역에서 보다 스마트한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 조치 · 관광 여행 등 틈새시장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조치 · 해안지역 사회의 특성, 특징, 문화 등 유무형 자원의 보호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조치 · 연안 지역 이해당사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역량 구축 관련 조치 등

자료 :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의 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EMFAF) 자료를 번역하여 재구성 및 작성

(4) 해양수산양식기금의 우선순위 4

‘우선순위 4’는 국제 해양 거버넌스 강화, 바다와 해양 환경 보호,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 분야를 지원한다.

〈표 3-21〉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4’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

구체적인 목표	세부 내용
해양 지식, 해양 감시 또는 해안 경비대 협력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양 및 해양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증진 조치 · 국가별 해양 데이터를 확보하여 모든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조치 · EU,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연구 협력 증진과 정보 공유 조치 · 해안 서식지의 탄소 흡수원으로서 잠재력을 정량화하기 위한 조치 ·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자연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해양 활동 관련 이해도 증진 조치

자료 :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의 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EMFAF) 자료를 번역하여 재구성 및 작성

제3절 시사점

수발기금 사업 대비 국내(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와 국외(일본 어업관계 제도자금,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 유사 기금의 사업종류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친환경·저탄소·자원보전·환경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으로의 전환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에도 반영되어 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급격히 발전한 온라인거래 및 직거래, 각종 마케팅 관련 사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별로 시설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참고하여 이하에서는 유사 기금의 사업과 비교 시, 수발기금의 부재 사업(신규사업 후보)을 친환경·저탄소 분야, 직거래·온라인거래 분야, 시설자금지원 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수발기금, 농안기금 및 축발기금의 재원 중에서 신규재원 발굴 대상 이면서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체수입²⁷⁾ 항목을 별도로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1. 친환경·저탄소 수산업 전환자금 신설

친환경·저탄소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양식어업 분야에서 ‘(가칭)배합 사료생산기반확충’, ‘(가칭)폐사어처리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선어업 분야는 연안어업자를 중심으로 ‘(가칭)연안어업개선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27) 기금의 재원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등이 있음. 자체 수입의 경우 기금의 핵심 재원으로서 수입(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각 기금별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본 연구의 신규재원 발굴 대상임. 그 외에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 공자기금예탁금회수 등), 여유자금회수(한국은행회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등)는 공통사항으로 신규재원 발굴 대상은 아님

참고로, ‘(가칭)연안어업개선자금’의 용도는 첫째, 연료유 소비절감장치, 자원 관리 어업추진을 위한 어구어로장비 지원 등, 둘째, 신양식기술도입자금 지원 등, 셋째, 승무원 안전기기 설치자금, 어선 전복 방지기기 설치자금, 어선 충돌 방지 기기 구입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친환경·저탄소 관련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신규사업 후보)을 비교해놓았다.

〈표 3-22〉 친환경·저탄소 관련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

유사 기금 사업	수발기금 부재 사업(신규사업 후보)
축발기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가칭)배합사료생산기반확충
축발기금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가칭)폐사어처리지원
일본 연안어업개선자금 연료유 소비절감장치 등 설치자금, 자원 관리형어업추진자금, 신양식기술 도입자금	· (가칭)연안어업개선자금 *연료유 소비절감장치, 자원관리 어업추진을 위한 어구어로장비 등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1(지속 가능한 어업 육성 및 수생 생물 자원의 복원보존, 어선원 건강안전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 등)	**신양식기술도입자금 등 ***승무원 안전기기 설치자금, 어선 전복 방지기기 설치자금, 어선 충돌 방지기기 구입자금 등

2. 직거래 및 온라인거래 활성화자금 신설

직거래 및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칭)수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가칭)수산물직거래활성화’, ‘(가칭)수산물마케팅지원’, ‘(가칭)수산물도매시장온라인 경매플랫폼구축’, ‘(가칭)양식사료직거래활성화’ 등의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직거래·온라인거래 관련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신규사업 후보)을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하였다.

〈표 3-23〉 직거래·온라인거래 관련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

유사 기금 사업	수발기금 부재 사업(신규사업 후보)
농안기금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 (가칭)수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농안기금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가칭)수산물직거래활성화
농안기금 농산물마케팅지원	· (가칭)수산물마케팅지원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2)어업 및 양식 제품의 가공마케팅을 통해 EU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사업	
축발기금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 (가칭)수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축발기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 (가칭)양식사료직거래활성화

3. 수산 시설 관련 종합지원자금 신설

상기 친환경저탄소 수산업 전환, 직거래 및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산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지원이 수반된다. 이에 수발기금 신규 사업으로 종합적 성격의 시설지원자금 신설을 제안한다. ‘(가칭)수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가칭)수산시설자금종합지원’, ‘(가칭)어업근대화자금’을 들 수 있다.

참고로 ‘(가칭)수산시설자금종합지원’의 용도는 수산물 제조·가공·수출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칭)어업근대화자금’의 경우 어선 내 선원 복지공간 확보, 어선·어구 보관 및 수리시설, 어업용 자재보관시설, 어선용 유수공급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수산물판매시설, 수산물보관시설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시설지원자금 관련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 (신규사업 후보)을 비교한 것이다.

〈표 3-24〉 시설지원자금 관련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

유사 기금 사업	수발기금 부재 사업(신규사업 후보)
농안기금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가칭)수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농안기금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식품 외식종합자금	· (가칭)수산시설자금종합지원 *수산물 제조가공수출업체 시설현대화 지원
일본 어업근대화자금 2호 자금(어선어구 보관 및 수리 시설, 어업용 자재보관시설, 제빙 냉동 시설 등)	· (가칭)어업근대화자금 *어선어구 보관 및 수리시설, 어업용 자재보관시설, 어선용 우수공급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제빙 냉동 시설, 수산물 판매시설, 수산물보관시설 등

4. 안정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재원 발굴 필요

수발기금, 농안기금 및 촉발기금의 재원(자체수입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농안기금 2조1,558억원, 촉발기금 6,292억원, 수발기금 5,770억원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각 기금의 자체수입원은 용자원금회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밖에 수발기금은 비축수산물판매수입, ‘수산물공매납입금’²⁸⁾ 등이 주요 수입원이다. 농안기금은 농산물판매수입이 주요 수입원이며, 촉발기금은 사업수입이 주요 수입원이다.

상기의 기금별 재원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수발기금의 자체수입 재원은 농안기금과 촉발기금 대비 법정부담금 등에서 훨씬 다양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산물공매납입금’, ‘관유물매각대(비축수산물판매수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28) 수입권공매 방식을 통해 해당 수산물의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

재원으로서 재원확보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재원의 발굴이 절실하다.

〈표 3-25〉 수발기금, 농안기금, 축발기금의 2022년 재원(자체수입) 비교

(단위 : 억원)

수발기금 재원	농안기금 재원	축발기금 재원
자체수입 합계(5,770)	자체수입 합계(21,558)	자체수입 합계(6,292)
경상이전수입(741) - 법정부담금(689) · 해양환경개선부담금(6)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99) · 수산물공매납입금(584) - 기타경상이전수입(52)	법정부담금(880) - 농산물 수입이익금(880) 기타수입(483) - 기타경상이전수입(456) - 위약금(25) - 기타(2)	법정부담금(25) - 축산물 수입이익금 - 대체초지조성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105) - 공유수면점사용료(105)		
관유물매각대(688) - 비축수산물판매수입(688)	농산물판매수입(6,760)	
용자원금회수(4,128)	용자원금회수(13,372)	용자원금회수(5,399)
재산수입(108) - 이자수입(108) · 여유자금이자수입(52) · 용자이자수입(56)	기타수입(51) - 기타재산이자수입(51) 용자이자수입(13)	사업수입(781) - 기금운용 수익금(781) 용자이자회수(60) 이자수입(27)

자료 : 2023년도 기금현황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및 작성

제 4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수산발전기금 관련 실태 조사

제 1 절 실태조사 개요

제 2 절 실태조사 결과



제 1 절 |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수산업계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응한 가격 안정화 문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산자원 변화, 탄소 중립 대응 강화 등 대외적 거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중 하나인 수발기금의 수산분야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금의 대출 취급기관과 주요 고객집단²⁹⁾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정성조사를 아래의 표와 같이 진행하였다.

〈표 4-1〉 수산발전기금 관련자 정성조사 기획

구 분	주요 내용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발전기금 등 정책자금 이용 현황 · 수산발전기금 이용 및 운용 시 애로사항 · 수산발전기금 사업 이용 활성화 방향 · *대출 이용 조건, 대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융자사업 예산 확대 등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 수산발전기금 주요 고객집단(중도매인협동조합, 수산가공수출업체 등) ·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관계자는 연구수행 중 수시로 협의 진행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그룹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유선(전화)을 통한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 *구조화된 정성 조사지 사전 준비
조사 일정	· 2023년 8월 7~8일

29) '22년도 수발기금 융자사업 실적은 우수수산물지원(수산물 수출업체, 1,322억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산지중도매인, 1,186억원), 수산물수매지원(수산가공업체, 852억원) 순이며, 총 융자사업 실적(3,599억원)의 93.4%(3,361억원) 차지

2. 주요 조사 항목

정성조사 항목은 크게 사업이용고객 집단과 대출취급기관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였다. 대출취급기관과는 달리 사업이용고객 집단의 경우 효과적인 정성조사를 위해 수산발전기금에 대한 정보(설치 목적, 경상사업 및 용자사업 목록)를 사전 설명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정성조사 대상별 조사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2〉 수산발전기금 이용 및 운용 관련자 대상 정성조사 기획

사업이용고객 집단		대출취급기관	
구 분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업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사업(가공, 수출 등), 품목, 규모 · 업체 경영 애로점(자금, 판로, 기술 등) · 자금 사용처(원료 구입, 인건비 등) 	기관 (은행)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발기금 취급 상품, 규모, 비중 · 수발기금 주요 이용 고객 및 업종 · 수발기금 사업 공고 기간 등
정책 자금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융통 방법(담보대출, 신용대출, 정책자금 등) · 여타 정책자금 사용 경험(중소기업시설자금, 공장설립자금, 운전자금 등) · 수발기금 인식도(이용 상품, 만족도 등) 	기금 이용 고객 민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발기금 사업자금 신청 시 민원사항(서류 준비, 대출 심사 등) · 수발기금 사용 관련 민원사항(기존 이용자 용자한도 축소, 높은 금리, 단기성 자금으로 신규신청 불편 등)
자금 사용 시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금 신청 시 문제점(정보 부재, 신청 시기, 행정서류, 농신보 발급 문제, 기존 이용자 대출한도 축소 등) · 자금 이용 시 문제점(대출 금리, 이용 기간, 한도 및 필요한 상품 부재 등)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발기금 개선사항(기존 이용자 용자한도 증액, 금리 인하, 행정 및 서류작업 간소화, 대출이용기간 연장 등)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발기금 개선사항(대출 한도 증액, 행정 및 서류작업 간소화, 금리 인하 등) 		

제 2 절 | 실태조사 결과

이하에서는 수발기금 주요 이용 고객과 대출취급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정성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수발기금 포함 정책자금 이용 현황’, ‘여타 정책자금 대비 수발기금 한계점’, ‘수발기금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1. 수발기금 포함 정책자금 이용현황

1) 정책자금 이용 시 제약사항(미약한 담보력, 농신보 발급 제약 등)

수산가공수출업체나 산지중도매인의 경우 사업자금 조달 시 대출이 안되거나 한도가 적으며, 대출 이용 시에도 높은 금리로 인해 사업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담보력이 약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업체는 기존에 받아 놓은 대출(신용 및 담보대출 등)에 부동산, 공장, 시설 등의 담보가 모두 잡혀 있어 추가적인 담보 제공 여력이 없었다.

대출 시 담보물은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적금, 시설 등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담보력이 가장 크다. 수산가공공장을 단순 임차하고 고객의 경우 가공 기계 장비, 보관 중인 수산물 원료 등을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불안정한 자산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통한 보증서 발급이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정책자금 도입 취지에 맞게 담보력이 약한 고객의 경우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 사업성, 미래 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수발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타 정책자금 이용현황(중소기업정책자금과 기술보증기금 이용 등)

수산가공수출업체는 수발기금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즉, 수발기금에 대한 정보 부재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추후 수협은행 등을 통한 기금 사업 공고 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수발기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경우 기금의 높은 금리조건(기본 금리+농신보 보증 수수료), 1년 상환조건으로 매년 대환 대출(신규 신청하면서 기존 대출 상환, 기존 대출자에 대한 한도 축소, 각종 서류 준비의 어려움 등)의 번거로움으로 수발 기금 자금을 상환한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특허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대출 한도가 높고, 장기상환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중소기업정책자금(용자)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이용하는 곳도 있었다. 해당 업체는 연어가공품의 위생처리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었다.

참고로, 중진공 정책자금(용자)의 종류는 혁신창업사업화³⁰⁾, 신시장진출지원³¹⁾, 신성장기반³²⁾, 재도약지원³³⁾, 긴급경영안정자금³⁴⁾이 있으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로 장기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구분	세부내용
시설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소요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사업장 매입 자금 등
운전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 임차보증금 등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30)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연간 60억 이내로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31) 수출 중소기업 육성(연간 20억원 이내로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3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연간 60억 이내로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33)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연간 60억 이내로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34)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운전자금으로 최대 10억원이며 3년간 15억원 이내)

2. 여타 정책자금 대비 수발기금 한계점

1) 단기성 융자자금 중심으로 매년 대출 상환 압박 및 서류 작업의 번거로움

수발기금의 주요 이용자인 산지중도매인이나 수산가공업체는 수산물 납품 후 자금 회수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물품을 납품했지만 대금의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수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대부분 단기성(대부분 1년 상환) 자금의 상환 압박을 늘 받고 있었다.

참고로, 아래 표는 수발기금과 유사 기금의 융자사업 중 동일 성격의 자금에 대한 지원조건을 비교한 것이다.

[참고] 수발기금과 유사 기금의 융자사업 중 단기성 자금 지원조건 비교		
사업명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양식어업지원	배합사료공장 운영비 지원으로 고품질 배합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대출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2년 상환
축산발전기금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조사료 생산지원, 전문단지 지원 및 운영자금 지원) : 대출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우수수산물지원	우수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 운영자금 대출금리 2.5~3.0%, 3년 상환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위판장 및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 자금,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지원	대출금리 1.5~3.0%, 1~3년 상환(대부분 1년 상환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산지유통종합자금(산지유통조직의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원물 확보) 및 노지채소과실류과채류의 수급안정자금(계약재배)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 대출금리 2.5~3.0%, 3년 상환		

한편, 수발기금 용자사업은 대출만기 도래 시 연장은 불가능(재해 등 대응 긴급 경영안정자금만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 연장 가능)하며,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 경우 대출 신청 서류(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거래실적확인서, 기타 요청 서류) 등 신규신청에 따른 각종 서류 준비와 아래의 농신보 보증서 발급 서류 준비 등 복잡한 서류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구분	세부내용
개인	실명증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법인 대표자 포함), 보증대상자 확인서류(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거주지 및 최종주소지 주택 등기부등본, 주사업장 등기부등본, 정책자금 배정문서, 기타 신용보증 필요 서류
법인 단체	사업장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차입결의서, 정관/규약, 출자자(주주)명부/출자지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3년), 최근월말 합계잔액 시산표, 정책자금 배정문서, 기타 신용보증 필요서류

자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발급 필요 서류 참조

한편,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기금에 대한 대출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만기 도래자의 대환 대출 신규 신청 시 대출한도가 대폭 삭감(예컨대 2억원 대환 대출이 필요한데 1.5억원만 대출됨)되는 문제가 있었다. 즉, 매년 삭감 금액만큼 상환 의무가 발생하며, 업체는 부족한 예산으로 거래처 물량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

현장에서는 1년 만기일시상환을 해결하기 위해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수산물을 불리한 시기와 가격에 매도하여 손실을 보면서 상환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형편이 열악한 업체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고율(9.5~13.5%)의 연체이자를 물게 되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정책자금으로서의 실효성에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다.

2) 기금 용자금리,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차별 적용으로 정책자금 보편성 약화

수발기금의 용자금리는 현재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2.5~3.0%(고정금리)로서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지만, 변동금리의 경우 2.82~3.82%로서 정책자금이라 하기엔 금리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금리차이(고정 0.5%, 변동 1.0%)도 크며,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라는 수발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즉, 기금 사업의 이용 확대를 위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금리격차 축소가 필요하다.

[참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수발기금 금리 비교

구 분	상환기간	어업인 금리(%)	비어업인 금리(%)
우수수산물지원	1년(일시상환)	(고정) 2.5 / (변동) 2.82	(고정) 3.0 / (변동) 3.82
수산물수매지원			

한편, 수산가공수출업체는 수발기금 사용을 위해 농신보 보증서 발급을 통해 자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때 농신보 발급 수수료는 대략 1.0% 내외 수준이었다.

[참고] 2023년 1월 기준 농신보 보증 수수료(%)

구 분	보증금액	농림어업(1차산업)	비농림어업(2차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2억원 이하	연율 0.3%	연율 0.4%
	7억원 이하	연율 0.4%	연율 0.6%
	7억원 초과	연율 0.6%	연율 0.9%
법 인	2억원 이하	연율 0.5%	연율 0.8%
	7억원 이하	연율 0.7%	연율 1.0%
	10억원 이하	연율 0.9%	연율 1.1%
	10억원 초과	연율 1.0%	연율 1.2%

자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 참조

수산물가공수출업체는 원료의 구매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수발기금(우수수산물지원, 수산물수매지원 등)을 10억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상기 농신보 보증 수수료율표에 따르면 연율 1.2%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수발기금 용자사업 이용 고객들은 총 4.0%(용자금리 3.0%, 농신보 수수료 1.0%) 이상의 금리로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담보대출과 비교 시 정책자금으로서의 차별성이 약하다.

3. 수발기금 이용 활성화 방안

1) 기존 고객 대출 한도 증액으로 상환 압박 해소와 업체 경영 원활화 지원

최근 수산물 원료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금 수요 확대, 신규업체의 자금 신청 증가로 기존 고객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 업계의 자금유통 관련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기존 고객의 대출한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수발기금 용자사업 예산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고로 ‘기존 용자금 이용자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관한 건의사항으로 (사)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의 건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산지중도매인은 전국적으로 약 4천여명이 활동 중이며, 산지 수산물 유통의 시작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내수 또는 수출을 통해 수산물을 분산·유통시킨다. 최근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여파로 유통소비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산지중도매인은 변함없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차질없이 매입·분산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중도매인의 구매력(자금력) 확대는 수산물 가격지지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예산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량의 신규재원 발굴을 통한 기금화가 필수적이다. 신규재원 후보군에 대한 소개와 기금으로 편입 가능한 예산 규모 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5장 제2절에서 살펴본다.

[참고] 산지중도매인 수산물 구입 및 유통 운영자금 확대 필요성 및 추진 방향

구분	주요 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중도매인 유통자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특성상(생산-유통) 산지중도매인 역할의 중요성 인정 · 2001년부터 정부는 산지중도매인 유통 운영자금 지원 ※ 전국 220여개 수협위판장에서 약 4천여 산지중도매인 유통업 경영 ○ 정부와 국회는 산지중도매인의 역할, 중요성 인정, 정책 및 제도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산지중도매인 법적 지위 부여 및 지원근거 등 마련(2015.3), 산지중도매인 “농신보” 보증 대상 포함(2018.9) ○ 유통환경 변화, 코로나19,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등에도 산지중도매인의 국산 수산물 소비촉진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 산지유통 간 상생 협력 필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산지중도매인의 대응력 한계, 조직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력 부족, 상품화 생산력 열악, 물류비 증가(인건비, 자재비, 운송비 등) ○ 산지위판장에서부터 선도관리, 안정성, 상품성 등 양질의 원료 공급과 유통 중요 ○ 수산물 특성상 산지중도매인 역할 중요성 감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적지위 부여와 “농신보” 대상 포함 등 제도적 조치에도 정부 자금 확대 등 대책 미흡(수년간 193억원 한정) ○ 산지중도매인 “농신보” 대상 포함으로 정책자금 이용 희망자 폭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희망 : (‘20) 350억원, (‘21) 450억원, (‘22) 560억원, (‘23) 600억원 - 지원규모 : (‘20) 174억원, (‘21) 193억원, (‘22) 193억원, (‘23) 193억원 ○ 지원자금 규모의 한계로 기존 이용자 이용금액 삭감으로 자금 상환 부담 증가 ○ 여름철 및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수산물 소비둔화, 거래처 어대금 회수 지연 등 자금 압박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가격 대비 불리한 가격에 수산물을 팔아서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신청액(소요액) 400억원 : 연차적 확대 필요 ○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개시에 따른 수산물 소비감소 대응 차원에서도 산지중도매인의 역할 강화 절대적 : 상품화, 소비처 개척(내수 및 수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가격지지 역할을 하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확대 필요

자료 : (사)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자료를 토대로 표로 재구성 및 작성

2) 원전 오염수 방류에 선제적 대응 일환으로 수산물 가격지지사업 등 선택과 집중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및 경영상 어려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상황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참고로 정부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올해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발기금의 수산물 가격지지 사업은 비축사업이 있다. 하지만 전체 수산물 생산액(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이 '22년 기준 약 7조4,277억원(302만톤)인 것에 비하면 정부 주도의 비축사업 예산('23년 기준 1,750억원)은 약 2.2%에 불과하여 엄밀히 따지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신정부의 국정기조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고 든든하게 지원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수발기금도 민간 중심의 정책사업 활성화 지원 기조에 편승하여 우수수산물 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에 대한 예산 확대 의견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들 3개 사업의 2023년 기준 총 예산은 3,664억원으로서 민간의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수출 촉진을 통한 가격지지 효과가 매우 큰 사업들이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에 심각한 침체가 발생할 경우, 수발기금의 주요 용자사업 금리와 농신보 보증 수수료에 대한 비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고객들의 자금 이용 용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현재 농신보 보증서 발급에 최대 1.2%(10억원 초과 시)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발기금 대출 금리 3.0%를 합치면 대략 4.0%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적정 선에서 금리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중 금리와 차별성도 없고 정책자금으로서의 장점도 약화될 것이다.

제 5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기금 사업전략 및 운영 방향

제 1 절 기본 방향

제 2 절 신규사업 및 신규자원 제안

제 3 절 기금 사업 이용확대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신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가격안정,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과 수산분야 적응 등 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위기상황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어업인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수산업 경영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수발기금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사업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발기금은 수산업 관련 거시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규사업 발굴, 그리고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규모 신규재원 발굴과 기금편입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존 사업의 예산 확대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폐지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1절 기본 방향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 정리하고, 수발기금 운용전략 콘셉트를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1. 시사점 종합

1) 수산업 거시 외부환경 변화 대응 및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73번(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에서 3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 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향상한다. 둘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 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

상기 정책목표 중에서 수발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두 번째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의 구축이 해당된다.

수발기금 신규사업은 무엇보다 정부정책 기조와 거시환경변화에 부합하면서 정부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원칙 하에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3가지 신규사업 후보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산가공수출업체 시설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제조·가공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의 경우 수발기금 용도에도 있지만 현재 사업 목록에는 빠져있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침체 충격을 완화하고 산지에서의 수산물 판로확보에 도움이 된다.

셋째, 수산물 위생 및 환경 보호, 자원 재활용을 위해 어류양식장 폐사어 처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2)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규모 신규재원의 확충 및 공감대 형성

앞서 수발기금, 농안기금, 축발기금의 2022년도 기준 재원 현황(자체수입)을 비교한 결과, 수발기금은 유사 기금 대비 다양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재원의 규모가 소규모이면서 매년 안정적인 기금 편입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수발기금은 법정부담금으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수산물공매납입금이 있고,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으로 공유수면점사용료, 관유물 매각대로 비축수산물판매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액이며 매년 대외 거시환경 변화에 따라 재원 편입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재고자산 매각대 감소와 만기도래 영어자금의 회수 감소 등이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따라서 당장 기금으로 편입하기에 용이한 소규모 신규재원을 다수 발굴하기 보다는 부담금 등 재원 납부와 관련된 산업계, 정부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재원의 발굴편입이 수발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중요하다.

이에 선행연구, 전문가 및 기금 사무국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발굴한 대규모 신규재원 후보군으로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을 제안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2절의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제안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상기의 신규 재원(후보군)들은 수발기금으로 편입 시 대규모이면서 안정적장기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의 경우 전국에서 매년 배출되는 온배수가 약 600억톤인데, 톤당 1원씩만 부과하여도 600억원의 재원 편입이 가능하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과 관련, 최근 10년간 매년 단속건수는 2016년까지 400여척 수준이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200여척 수준으로 감소, 코로나 유행시기인 최근 3년간은 평균 80여척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담보금 징수액은 2016년까지는 평균 200억원 이상 징수되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00억원 이상, 코로나 유행 시기인 최근 3년간은 평균 50억원 미만의 징수실적을 보였다.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의 경우 유어낚시 인구는 2024년에는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며, 시장 규모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유어낚시자원부담금 부과(낚시 티켓 또는 각종 기자재 구입 시 ‘간접세’ 명목) 시, 1%만 부과하더라도 200억원 수준이다.

3) 중요 이슈에 적시적 대응을 위한 기존 사업의 확대·폐지 등 구조조정 검토

수산업이나 수발기금을 둘러싼 최대 현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사태일 것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안전성 여부를 떠나 수산물 소비가 일시적

으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고,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내년 초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수산물 소비위축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즉각적으로 수산물 가격지지 및 수출판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발기금 지원사업 중에서 수산물 가격지지 목적의 사업은 4가지가 있다. 즉, 경상사업은 비축사업, 용자사업은 우수수산물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이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에서 이들 사업은 수산물 가격지지와 수산물 수출 판로확대 자금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도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고자 경상사업 중 비축사업 예산을 전년도 1,085억원 대비 올해 1,750억원으로 약 700억원 증액하였고, 수산물수매지원사업도 전년도 852억원 대비 올해 1,153억원으로 약 300억원 증액하였다.

하지만 생산자로부터 최고가 경매를 통해 수산물을 구입하는 산지중도매인의 어대금 결제 자금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수산물 수출업자의 원료 구매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은 동결되어 현장에서의 자금 증액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2023년도 전체 용자사업(4,031억원) 대비 우수수산물지원(1,324억원), 수산물수매지원(1,153억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1,186억원)의 비중은 총 3,664억원으로 91%를 차지하여 용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위기상황에서 현재 당장은 수산물 소비침체가 없는 상황이지만, 수산물 가격지지 역할을 하는 상기 사업에 대한 예산의 선제적 확대로 수산물 소비 침체와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은 2023년 기준 약 11억원으로 소액이며, 해양환경과 관련된 사업이긴 하나 수발기금의 용도인 수산업 경영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 등에 관한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후 폐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5-1〉 수산발전기금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후보, 기존사업 선택과 집중 등 세부 방향

구 분	사업명 및 지원 방향		비 고
신규 사업 후보 (3)	· 수산가공수출업체 시설 지원		· 수산물 제조가공·수출업체 시설 현대화, 수산가공업체 신규 창업을 위한 설비 구축 지원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작거래 매장 신규 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 보증금과 시설 설치비용, 어업인, 생산자 단체, 영어조합법인 등 가공업체(단체)로부터 국산 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 어류양식장 폐사어 처리 지원		· 폐사어 처리시설 폐사어 수거운반용 중장비, 퇴비화 및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등 지원
신규 재원 후보 (3)	·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		· 최대 600억원 대규모 재원 편입 가능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 최대 200억원 대규모 재원 편입 가능
	· 유어납시자원부담금		· 최대 200억원 대규모 재원 편입 가능
기금 사업 선택과 집중	가격 지지 사업 확대	· 우수수산물지원(용자사업)	· 수산물 가격지지 사업 · 비축사업(경상사업)과 수산물수매지원 (용자사업)에 대해서만 전년 대비 예산 증액 · 용자사업 중심 예산 확대 필요
		· 수산물수매지원(용자사업)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용자사업)	
	사업 폐지	·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지원	· 기금 설치 목적 및 용도와 맞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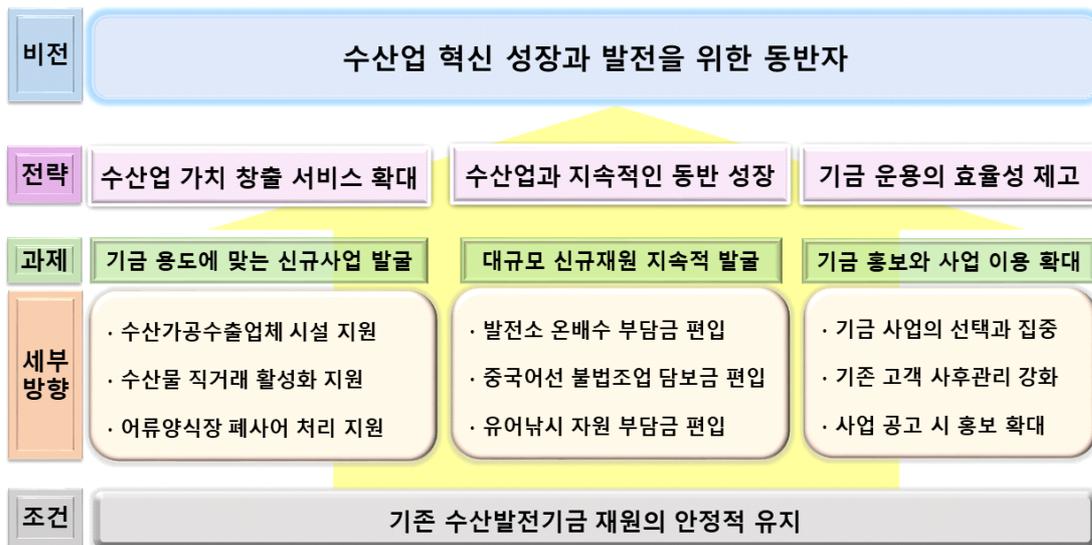
2. 수산발전기금 비전 및 전략

수발기금의 비전, 전략, 추진과제 및 전제조건 등 운용전략 개념트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수발기금은 무엇보다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원의 확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 외부 거시환경 변화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로 어업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이에 수발기금의 비전을 ‘수산업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설정함으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인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비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는 3가지 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산업 가치 창출 서비스 확대, 둘째, 수산업과 지속적인 동반 성장, 셋째,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이다.



[그림 5-1] 수산발전기금 운용전략 개념트

상기의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수발기금의 추진과제 및 세부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먼저,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면서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이 없는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신규사업 후보로는 수산가공수출업체 시설 지원,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어류양식장 폐사어 처리 지원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대규모이면서 안정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는 신규재원의 발굴 및 편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을 신규재원 후보군으로 제안하며, 신규재원의 편입 논리와 대략적인 예산 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홍보 및 사업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기금 사업의 선택과 집중, 기존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사업 공고 시 홍보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한다.

정리하면, 수발기금의 비전, 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 방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 수발기금 재원의 유지확보가 필수적이다.

이하에서는 수발기금 운용전략 콘셉트의 세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제2절에서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을 설명한다. 아울러 제3절에서 기금 사업의 선택과 집중, 기존 고객 사후관리 강화, 사업 공고 시 홍보 확대 등 수발기금 사업이용 확대 방향을 제시토록 한다.

제 2 절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제안

본 절에서는 수발기금 신규사업과 신규재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수발기금 재원 부족을 고려하여 원금 회수 원칙인 용자사업 중심으로 발굴하였고, 사업 필요성, 주요 내용, 용자조건의 순으로 정리한다.

신규재원의 경우 소규모 재원의 다량 발굴보다는 대규모이면서 안정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는 신규재원을 발굴하고자 하였고, 기금화 필요성, 사전 협의 및 법개정 사항, 예산규모 산출(추정)의 순으로 설명한다.

1. 신규사업 분야

1) 기본 방향

신규사업 발굴은 현장의 단순 민원성 사업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 살펴보았던 수산업 거시환경 변화와 기금의 설치 목적·용도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후보군을 제안하였다.

[수발기금 신규사업 발굴 기본원칙]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와 「동법」 시행령 제2조(수산업의 범위)³⁵⁾에 부합
- 수산업 경영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등 설치목적 부합
- 탄소중립,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물 안전, 유통가공, 시장개방, 수출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부합

35) 어업(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재생산업, 관상어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수산동식물가공업(유지제조업, 소금가공업 포함), 수산물유통업(수산물 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양식업(해수면, 내수면) 등 범위가 매우 넓음

2) 신규사업 제안

상기의 신규사업 발굴원칙을 토대로 ‘수산물가공수출업체 시설 지원’,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어류양식장 폐사어 처리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제안한다.

(1) 수산물가공수출업체 시설 지원

가. 사업 필요성

현행 수발기금 용자사업 중에는 우수수산물지원과 수산물수매지원을 통해 수산물 원료 구매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수산물가공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 지원사업은 수산물 관련 시설 현대화나 자동화에 대한 사업지원은 아니다.

참고로, 수산물 가공시설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면서 녹 발생 및 유탄류 유출 등에 따른 위생안전 문제, 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유발, 제품 가공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 저하 등 업체 경영상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3D업종인 제조업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정부의 식품안전성 점검 강화, 소비자의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리하면 국내 수산물가공수출업체의 시설장비 현대화와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 업체에 대한 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업계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내용

먼저 **지원 대상**은 수산물식품 제조가공업체(수산물전통식품 가공업체 포함)와 수산물 수출업체 등이 해당되며, 기존 업체 경영자와 신규 창업자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음으로 **자금의 사용 용도**는 시설장비 구축 자금으로서 수산물식품 제조시설의 현대화 및 소규모 제조업 창업 시 시설 구축 자금, 수산물 수출업체의 저장 시설 조성 및 물류 장비 구입 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 농안기금 시설 구축 지원사업 사례

- (농식품시설현대화) 농식품 제도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의 제조시설 현대화 및 소규모 식품 제조시설 창업 자금 지원
 - (외식업체육성) 외식업체 시설 자금 지원
 -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지원)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시설 자금 지원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농식품 수출업체 시설 현대화자금 지원
- ⇒ 다양한 분야와 업종별로 폭넓게 시설 구축 자금 지원 중

다. 용자조건

시설자금의 경우 농안기금이나 일본의 어업관계 제도자금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출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수산가공수출업체 시설 지원 자금도 총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거치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용자금리는 유사 성격 기금인 **농안기금 시설자금**(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 농식품 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지원)과의 형평성 및 금리 상황을 참고하여 고정금리(보통 2.0~3.0%) 또는 변동금리³⁶⁾를 적용한다. 아울러, 어업인 및 영어조합법인, 일반 업체에 대한 금리조건을 고정 및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 0.5~1.0% 수준에서 차이를 부여한다.

용자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초 시행 시 개소당 10억원 이내로 한도를 정하고 추후 사업지원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수산제도가공 및 수출 관련 시설 지원사업의 **의무사항**으로 일정 수준 이상 국산 원료 구매 및 용자액의 과반수 이상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기업에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국산 수산물 이용 촉진 및 자금 이용자의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6) 변동금리의 경우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금리변동(6개월 단위 변동) 상황을 준용하여 금리 조건을 유동적으로 조정함(변동금리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하 동일 적용)

(2)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가. 사업 필요성

수산물의 전통적인 유통경로는 생산자, 산지위판장(경매), 산지중도매인, 소비지도매시장(경매),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6단계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정착해가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직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한 수산물 직거래 등장 등 유통채널이 다변화되고 있다. 즉, 기존의 농산물에 이어서 꽃게, 전복 등의 활수산물도 산지에서 전자상거래기업이 수산물을 직접 매입하여 전처리 및 포장 후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하는 새벽배송 시스템이 보편화되었다.

참고로, 수산물은 품목, 제품의 유형, 형태 및 상태 등에 있어서 다양하고 고유의 특성이 있어 직거래 개념인 생산자(생산자단체 등)가 중간상인의 개입 없이 소비자(소비자단체 등)와 직접 거래하기가 쉽지 않다. 김만 하더라도 물김 상태의 원물을 건조 및 조미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유통과정에서 최소한 한 단계 이상의 과정(가공 후 유통)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산물 직거래의 한계성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서 거래하는 것도 직거래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 2015년 제정) 제2조(정의)에서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 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생산자의 개념에 농업인, 생산자단체, 기타 농업법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볼 때 수산물 직거래 및 수산물 생산자의 개념을 「농산물직거래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농산물 대비 부패가 빠르고, 가공유통 중 교차오염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있어서 직거래 시스템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통단계 및 유통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비자는 고선도 수산물을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인 어업인은 제값을

받고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수산물 직거래는 수발기금의 용도에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³⁷⁾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기금 사업에는 빠져있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나. 주요 내용

먼저 **지원 대상**은 농업 분야 사례를 참고하여 국산 수산물(원물, 가공품)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유통사업자, 어업인(생산자단체 등),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으로 폭넓게 설정한다.

다음으로 **자금의 사용 용도**는 **시설자금**인 경우 직거래 매장 신규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보증금과 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토록 한다. **운영자금**인 경우 어업인, 생산자단체, 영어조합법인 등 가공업체(단체)로부터 국산 수산물 구매비용 조달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참고 농안기금 및 축발기금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사례

- (농안기금 직거래 용자지원 사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직거래 등 농산물 직거래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 직거래 농산물 구매자금 등을 지원
- (축발기금 직거래 용자지원 사업)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축산물직거래활성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자금을 지원

다. 용자조건

참고로 직거래 시설조성 자금의 경우 수산가공수출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편이다.

3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중도매업, 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 소매시설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물발전기금으로 용자 지원할 수 있음

매장의 신규개설이나 확장 시 임차보증금과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총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하고, 거치기간을 2년으로 한다(농안기금의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사업 중 판매장 개설자금 지원의 상환조건 참조). 다음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총 상환기간을 거치기간 없이 1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일 조건을 적용한다.

용자금리는 농안기금의 직거래 자금(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축발기금의 직거래 자금(축산물직거래활성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등과의 형평성 및 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고정(보통 2.0~3.0%) 또는 변동 금리를 적용하며, 어업인(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과 비어업인(일반 유통업체)에 대한 금리조건을 달리 설정한다.

용자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개소당 3억원, 운영자금은 개소당 5억원 이내로 하되 추후 사업지원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한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의무사항으로서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 완료 및 대출액의 30% 이상 직거래 수산물 판매, 운영자금의 경우 대출액의 125% 이상 구매 및 소비자 직판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다(농안기금 직거래 관련 사업의무 참조).

(3) 어류양식장 폐사어 처리 지원

가. 사업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생산은 어획생산에서 양식 생산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세계식량기구는 2050년 전 세계 인구가 90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양식산업을 미래 식량위기 해결의 열쇠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양식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양식 강국으로서 2016년 이후로 국내 양식산업은 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모두를 합친 총 어업생산량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2022년 총 어업생산량 360만톤 중 해면양식 생산량은 226만톤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양식산업의 발달과 함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어류양식업의 경우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 적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의 빈발로 매년 폐사어 처리 관련 양식

업계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폐사어를 방치할 경우 부패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병원균 증식으로 인한 인근 양식장 위생안전성 문제 유발, 폐사어 재활용 기술 미약으로 수산자원 낭비 등 경제적·환경적 제반 문제를 다양하게 초래할 수 있다.

참고로, 2023년 8월 남해안을 중심으로 고수온 영향에 따른 양식어류 폐사 피해를 보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총 90여만마리의 폐사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해 규모만 91억원수준에 달한다.

양식장 폐사어 문제는 수십년 간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 재활용 기술의 대규모 사업화 연계 미약으로 현실적으로 재활용 시설의 활용도 제고 보다는 원활한 수거 시스템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정리하면 어류양식장 폐사어 처리 지원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매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에서 어류 폐사체의 신속한 수거를 통한 악취발생 및 위생환경 저해 예방,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친환경 퇴비화 등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 주요 내용

먼저 **지원 대상**은 자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달리한다. 첫째, 양식어류 폐사 발생 시 악취 및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폐사어 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장비, 폐사체 수거를 위한 부대 기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어류양식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양식어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공동자원화를 위해 퇴비화 작업 및 바이오 에너지화 등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운영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 어업법인,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자체, 퇴비유통 전문조직 등이다.

다음으로 **자금의 사용 용도**는 첫째, 악취개선 및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폐사체 처리시설 조성, 악취 저감 및 효율적 수거작업을 위한 부대 기계장비 구축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둘째, 수산자원 재활용 등 공동자원화를 위해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조성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참고] 축발기금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사례

· 농가,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개선, 공동자원화, 친환경 퇴비
·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

다. 용자조건

어류양식장 폐사어 처리 지원은 시설·장비 구축 지원사업으로서 축산발전기금의 가축분뇨처리지원 용자사업을 참고하여 용자조건을 제시한다.

세부적으로 총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인 것을 감안하여 10년으로 하고 거치기간은 3년으로 설정한다.

용자금리는 축발기금 용자사업 중 유사 성격 사업인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및 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고정(보통 2.0~3.0%) 또는 변동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어업인(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과 비어업인(일반 수거업체, 퇴액비 및 바이오가스 제조가공 업체 등)에 대한 금리조건을 달리한다.

용자한도는 폐사어 수거용 부대 장비·시설,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최초 개소당 10억원 이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되 추후 사업 실적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다.

동 지원사업의 **의무사항**으로 폐사어 수거 및 퇴비화 가공시설의 용도에 맞게 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폐사체 수거 장비 및 퇴비화·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도모한다.

2. 신규재원 분야

1) 기본 방향

신규재원 발굴은 수발기금의 설치 목적과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하고, 대외 거시 외부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시적 대응,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금 편입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발기금 신규재원 발굴 기본원칙]

-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규모화를 위해 기금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대규모 재원 발굴
 - 시장개방,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물 유통소비, 탄소중립 등 외부환경 대처를 위한 재원 발굴
 - 기금 설치 목적인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재원 발굴
-

2) 신규재원 제안

상기 기본원칙을 토대로 신규재원 후보군은 대규모이면서 안정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는 분야로서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을 제안한다.

아울러 신규재원으로 편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기금의 설치), 제47조(기금의 조성), 제49조(기금의 용도)의 일부 조항 개정(신설, 추가 등)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은 「수산자원관리법」,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을 근거법령으로 두고 있어 서로 대칭되는 법령에 대한 개정도 동시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 정부는 수산물 생산 및 소비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사전 대응 차원에서 2024년 기금의 경상사업 중 비축사업을 315억원 증액하였고, 기후변화 위기 등의 대응을 위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 복원사업(3가지)을 226억원 증액함

⇒ 경상사업 예산은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즉, 신규재원 후보군인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최대 600억원)’, ‘중국어선 불법어업 담보금(최소 50억원, 최대 200억원)’, ‘유어낙시 자원 부담금(최대 200억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이 시급함

· 정부는 경상지출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복원사업, 비축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것과 병행하여 신규재원 후보군을 기금으로 편입하는 법개정 절차 돌입 필요

☞ 이를 통해 현행 기금의 수입 대비 사업비 지출이 커서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 해소 가능

· 단, ①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등에 수반되는 각종 제반 비용은 제외하며, 순수한 담보금 재원의 일부만을 기금으로 편입 필요

②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과 유어낙시 자원 부담금은 추가 편입사업 없음

(1)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

가. 기금화 필요성

2021년 기준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남동, 남부, 서부, 중부, 동서)에서 해양에 배출한 온배수는 약 623.7억톤이다.³⁸⁾ 수온보다 8℃가량 높은 온배수가 바다로 유입되면 바다의 갯녹음 현상과 수온 변화에 따른 해조류 생육환경 교란을 초래하고, 어족자원의 감소 또는 환경여건이 좋은 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산물 생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바다숲 조성, 인공어초 설치, 종자 방류 등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점용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금을 부과하고 있다.

38) 대한뉴스(2022.9.27.), “한수원·발전5개사,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623.7억톤 해양에 배출” 참조

수발기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자체수입원으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점사용료(바다모래 채취행위 등에 부과 징수) 등을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 발전사업자에 대한 온배수 부담금 징수는 하지 않고 있다.

정리하면 해양 생태계 교란의 원인인 온배수 배출 발전사업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산자원 조성, 해양환경 개선, 어업인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발기금 재원으로 편입이 필요하다.

나. 사전 협의 및 법개정 사항

발전소 온배수 배출 사업자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해서는 사전에 발전소가 위치한 소관 지자체와의 논의를 통해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온배수 배출 행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후에 부담금 조성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진행 및 의원입법으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참고로, 관련 법률 및 개정 진행 상황을 보면 2020년 6월 윤재갑·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01016)을 발의한 바 있다. 즉,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 등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계류 상태에 있다.

법개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 제1항에서 수산자원조성금 징수대상에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발전소 및 임해공장을 추가하도록 한다. 아울러, 부담금의 사용은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과 수산자원의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에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온배수 배출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을 수발기금으로 편입이 가능할 것이다.

다. 예산규모 산출(추정)

매년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서부, 동부, 중부, 남부, 남동)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600억톤 이상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수질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배출량×단위당 부과금액×지역별 부과계수 등으로 계산되지만, 온배수 배출이 불법적인 배출은 아니므로 과도한 부담금 징수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온배수 배출 톤당 1원 정도³⁹⁾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23년 전국의 발전소에서 배출한 온배수는 약 623.7억톤이며, 연간 600억톤 내외의 배출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은 연간 600억원 규모로 편입할 수 있다.

(2)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가. 기금화 필요성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해양환경 훼손 행위도 있으나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규모는 대략 2.5만척 수준이며, 국내 수산부분의 직·간접 피해규모는 연간 약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⁰⁾ 이는 연근해 어선감척, 자원 방류 등 자구노력을 통한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중국어선 불법어업으로 인해 상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건수⁴¹⁾를 2008년 이후로 살펴보면 매년 400여척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0여척 전후로 줄었고, 최근 3년(2020~2022) 기준으로 100척 미만으로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담보금 징수액을 보면 2016년까지는 매년 200억원 내외의 수준을 보였고, 2019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지만 최근 3년(2020~2022) 기준으로 80억원 이하로 감소하였다.

39) 농림수산식품부(2012)의 온배수 배출업소에 대한 부과금 산정(안) 참조

40) 어업인수산(2021.10.27.), “중국어선 침략 조업 또다시 극성, 불법조업 담보금 반드시 피해어업인에 돌려줘야” 참조

41) 해양수산부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2008~2022) 참조

비록 단속건수와 담보금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법조업 상황은 매년 계속되고 있으며, 담보금 징수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금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적발되면 벌금이나 추징금, 나포 때 석방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어업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어업에 따른 벌금이 피해 어업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중국어선 불법어업 담보금을 수발기금 재원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나. 사전 협의 및 법개정 사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기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예산당국인 기재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즉, 현재 전액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는 담보금의 일부를 수발기금 예산으로 지원하여 수산자원 조성, 서식처 복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로 불법어업은 수산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금 징수액의 사용처를 피해업종인 수산분야로 명시하여 재원과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재원으로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외에 각종 위반(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⁴²⁾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관련 법률 및 개정 진행 상황을 보면 2020년 12월 이양수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06091)을 발의한 바 있다. 즉,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발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기재부 등)와의 협의 지난으로 현재 계류 상태에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의 수발기금 귀속을 위해 크게 2가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4조의2(담보금 등의 납입) 신설이 필요하다. 즉, “동법 제21조

42)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에서는 「동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0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편입하고 있음

(몰수 또는 추징)에 따른 추징금 및 제24조(담보금의 보관·국고귀속 및 반환 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기금의 설치)에 따른 수산 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둘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4조2에 따라 납입되는 담보금”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담보금을 수탈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예산규모 산출(추정)

최근 10년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담보금 징수 현황을 보면 2012년 171억원, 2015년 264억원, 2018년 173억원으로 연간 200억원 내외 수준의 징수 실적을 보였으며, 2019년 123억원을 끝으로 코로나 시국인 2020년 24억원, 2021년 78억원, 2022년에 35억원으로 연간 80억 미만 수준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상기의 추세로 볼 때 코로나 시국인 최근 3년간 중국어선 불법어업도 주춤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중국의 어업 상황에 따라 불법어업은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앞으로의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불법어업 담보금은 최소 50억원~200억원 사이에서 징수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동 예산의 수준에서 기금으로 편입이 가능할 것이다.

(3)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

가. 기금화 필요성

유어낚시 인구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0년 652만명에서 2020년 921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⁴³⁾

이처럼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돛류, 갈치, 주꾸미 등 중요 수산자원의 남획 및 낚시용품(납추, 낚시줄 등) 유실·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정부는

43) 서울경제(2023.7.9.), “낚시인 1000만 시대... ‘낚시환경부담금’ 도입 재추진” 참조

유어낙시인에 대해 '낙시환경부담금' 도입을 2018년에 추진한 바 있었다. '낙시환경부담금'은 일종의 간접세이며 여가 목적의 낙시인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낙시 레저 문화가 일찍 자리 잡은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이용자(수혜자,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낙시면허제 등을 도입·시행하고 있다.⁴⁴⁾

미국의 경우, 낙시면허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과 낙시 장비, 모터보트 및 연료 등에 대한 목적세를 부과해 신탁기금으로 조성하고, 수산자원 조성 및 낙시환경 개선에 재투자하고 있다. 동 제도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낙시 도구 제조업자, 낙시객 등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이다.

수발기금의 정상사업에는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 유어낙시 자원 부담금은 신규 재원으로 적합하다. 자금의 용도는 재원의 성격에 맞게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하면, 해외에서도 낙시환경부담금 제도 시행 초기에 반발이 컸지만, 최근에는 대다수 지역에서 낙시면허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낙시가 국민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은 만큼, 유어낙시 자원 부담금 도입을 통해 유실된 낙시 도구 수거 및 수산자원 조성 비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나. 사전 협의 및 법개정 사항

유어낙시 자원 부담금의 기금 편입을 위해서는 역시 기재부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즉, 부담금 징수 명목으로 간접세 또는 각종 면허 발급 및 관련 교육 이수에 대한 수수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편입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동 부담금 징수의 취지는 수산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인 낙시인들의 비용부담을 통해 유어낙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육성에 있다. 이는 수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설치된 수발기금의 설치 목적(「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기금의 설치))과도 부합한다.

44) 인천일보(2023.6.15.), “낙시산업 호황...바닷속은 골병-3. 바다 오염 막을 방안은” 참조

참고로, 해수부는 2018년 낚시환경부담금을 도입하려 했으나 낚시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5년 이상이 지났고, 상기의 낚시환경부담금 징수 시 낚시인과 낚시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나 최근 낚시로 인한 환경 피해 및 자원 남획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낚시업계, 낚시협회, 정부, 어업인 단체 간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된다.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의 기금편입을 위해서는 **2가지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6조(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의 부과 징수) 조항을 신설한다. 신설 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어낚시 자원관리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어낚시업자에게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이다. 또한 「동법」 제5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를 신설하여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은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연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한다.

둘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6조(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을 추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유어낚시객 및 낚시(터)업자에 대한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을 기금화할 수 있다.

다. 예산규모 산출(추정)

국내 유어낚시객은 레저산업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2024년에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낚시용 기자재 등 낚시산업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낚시어선 및 낚시터 이용, 낚시대 및 부대 장비 구입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은 낚시터·낚시어선 티켓, 각종 기자재류 구입 시 간접세 명목으로 1%만 부과해도 연간 200억원 수준의 부담금 징수가 가능하다.

참고로 2023년(계획)상 수발기금 경상사업으로 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 360억원,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에 12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수발기금의 재원을 고갈시키는 사업으로 상기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을 기금으로 편입하면 해양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고, 그 혜택은 온전히 유어낚시인과 어업인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제3절 | 기금 사업 운영 방향

본 절에서는 수발기금 사업의 이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운영 세부 방향을 제시토록 한다. 이를 위해 기금 사업의 선택과 집중, 기존 고객 사후관리 강화, 사업 공고 시 홍보 확대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1. 기금 사업의 선택과 집중

수산발전기금은 수산분야 거시 외부환경 변화와 정부의 수산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 분야와 예산 규모 등에서 유연하게 변동되어 왔다. 최근 3년 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와 실질적인 방류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가격안정사업 분야의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예를 들면, 경상사업에서 비축사업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에 1천억원 초반 수준이었지만, 2023년(계획)에 1,750억원으로 약 700억원 이상 증액되었다. 용자사업의 경우에도 수산물수매지원사업이 2022년 852억원이었으나 2023년(계획) 1,153억원으로 약 300억원 증액되었다.

참고로 2023년(계획)에 경상사업의 비축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산 측면에서 66%를 차지하여 핵심 사업이다. 용자사업의 경우 우수수산물지원(32.8%), 수산물수매지원(28.6%),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29.4%) 사업이 예산 측면에서 91% 비중으로 용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발기금에서 가격안정 및 가격지지 기능을 하는 사업은 비축사업, 우수수산물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사업이 있다. 아울러 최근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바, 수산물 가격하락에 적시적 대응을 위해 이들 사업 위주로 **예산 배정의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특히 전년 대비 예산이 동결된 우수수산물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에 대한 예산 확대가 나머지 사업(비축사업, 수산물수매지원)의 예산 증액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 우수수산물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의 중요성

- (사업 목적) 우수수산물지원사업은 우수 수산물 수출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
 ⇒ (효과) 수산물 소비위축이나 가격 하락 시 수산물 재고분을 해외로 수출(미국, 유럽, 동남아 등)하여 판로 확보와 가격 유지에 기여
- (사업 목적)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은 산지위판장 및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 산지중도매인의 운영자금을 지원
 ⇒ (효과) 산지중도매인은 자금력 확보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와 각종 대외여건의 급변 속에서도 국산 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전량 구매하여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며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소비촉진에 기여. 한편, 국내 유통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프리카 등 해외로 수산물 수출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있음

한편, 수발기금 용자사업 중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의 경우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도와 크게 관련이 없으며, 2024년부로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2. 기존 고객 사후관리 강화

기금의 용자사업은 정부 보조사업과는 달리 자금 지원 후 원금회수가 원칙이다. 또한 자금의 운영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과 관련,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후관리의 주된 목적은 첫째, 대출취급기관의 자금 배정, 대출 실행, 자금 회수, 사업 의무량 준수 여부 등 용자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정책자금 사용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 향후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 수발기금의 용자사업은 1년 기간의 단기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대출 미상환이나 이자 납부 연체 등 금융부실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대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산업의 영세성, 산업의 특수성, 상환기간이 1년으로 단기성 용자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체 경영 여건상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용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은 수협은행(수산해양금융부)이나 수협중앙회(경제기획부), aT센타 등 대출취급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과 여러 유형업종의 고객을 상대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사후관리 시 주요 점검 항목은 첫째, 기금의 사업목적 및 취지 등에 부합하게 효율적인 사용 여부, 둘째, 정책자금 지원의 적정성 및 행정조치 이행 여부, 셋째, 기금의 적기 대출 및 상환 여부, 넷째, 기타 법규와 지침 등의 준수 여부 등이다.

[참고] 지원조건 위반행위 시 제재 사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준)

위 반	사업명 및 지원 방향	제재 내용		
		대출 정지	대출금 회수	위약금 징수
목적 외 사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외 사용 · 허위자료 제출 · 부도, 사업 포기 등에 의한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 시설/장비 등을 농림업 외로 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사용의 정도에 따라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사용한 대출금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연체금리 - 대출금리
법령 위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위반 · 출하의무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간 정지 또는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 	-
사업 의무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적이 자부담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연체금리 -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적이 사업 의무에 미달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행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정리하면, 각 사후관리 기관에서 읍면 단위에 분포해 있는 어업인이나 수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력과 시간적인 여력, 점검분석 항목의 광범위성, 전문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읍면단위까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기과제로 ‘(가칭)수산발전기금 사후관리 전문인력 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수협은행은 각 광역단위별로 지역금융본부(부산, 제주, 전남, 경남, 전북, 경인, 충남, 강원 등)를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 시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기금 용자사업의 사후관리 진행과 현장의 민원 대응에 대한 전문적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담당 직원의 역할은 시군과 읍면지역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어업인 등 대출 고객을 만나 사업실적 점검, 현장에서의 대출 이용 시 고충 사항 파악과 행정서류 구비 등 업무지원을 통해 대출 부실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대출취급기관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은 다소 경감될 수 있고, 대출취급기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 공고 시 홍보 확대

수산발전기금의 다양한 사업은 수협은행·수협중앙회·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수산전문지 등을 통해 매년 해당 사업별로 사업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 방식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객들이 수협이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수산전문지 등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장 조사 결과 수발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업체가 상당수 있었으며, 이들 수발기금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홍보와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한다면 기금의 홍보, 사업의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은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흠어진 업무 관련 앱을 'On-Biz'로 통합**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홈페이지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모바일 앱 서비스'를 사례로 소개하도록 한다.

참고로, 스마트폰은 평소에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틈틈이 문자나 팝업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부재로 인한 기금 공모 신청 및 기금 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모바일 앱 서비스의 장점은 기술 평가, 보증 상품, 벤처기업 인증정보, 기술 이전 금리 정보 안내는 물론 고객이 실시간으로 보증신청 및 보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고객의 위치에서 가장 인접한 대출취급점이나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위치를 알려주고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 손쉽게 기술보증기금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은 고객별 맞춤형 정보 및 상품 안내를 위하여 ‘Push 서비스’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고객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동 어플은 play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료 : 기술보증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사이트(https://apkcombo.com/기보_기술보증기금/kr.or.kibo.mibile/) 참조

[그림 5-2] ‘기술보증기금 모바일 앱 서비스’ 사례

정리하면, 수발기금도 ‘(가칭)수산발전기금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사업신청 정보 확인 및 사업신청 결과를 조회하고, 각종 서류 증빙제출의 간편성 등을 향상시킨 대고객 서비스(비대면, 모바일, 실시간, 보안성 등)를 다양하게 제공토록 한다.

상기의 모바일 앱 서비스만 개발보급하여도 수발기금의 홍보 효과는 네트워크를 통해 극대화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금의 존재와 공고 시기를 몰라서 사업 신청을 못하고 기금을 이용하지 못했던 기존 잠재 고객들이 기금을 인지하고, 기금 사업을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결국 기금의 비전인 수산업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 6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제 2 절 정책 제언



제 1 절 연구 결과

1. 수산발전기금 운용 기본 방향

1) 정부 수산정책, 수발기금 용도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현 정부는 국정과제 73번(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에서 “수산물 생산·가공 유통 혁신으로 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수발기금도 새정부의 국정기조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부사업과의 중복성을 최대한 피하고 수발기금의 용도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에서는 빠져있는 사업, 그리고 현장의 요구사항 검토를 통해 3가지 신규사업을 제안하였다.

즉, 수산물가공수출업체 시설 지원,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어류양식장 폐사어 처리 지원을 중심으로 아래의 신규사업 제안부분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2)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규모 신규재원 발굴 및 기금화 공감대 형성

현행 수발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소규모이면서 매년 정책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재원의 불안정성이 강해 안정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는 신규재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고로 수산물 가격지지 사업인 비축사업과 수산물수매지원사업 등 대규모 예산을 동반한 기금 사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 분석과 기금 사무국 및 관련 전문가 면담 결과를 통해 발굴한 대규모 신규재원 후보군으로서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담보금,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을 제안하도록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신규재원 제안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3) 수산분야 외부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존사업의 선택과 집중

최근 수산분야 최대 이슈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모를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수발전기금에서 수산물 가격지지 사업은 경상사업 중 비축사업, 용자사업 중 우수수산물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사업이 있다.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상황에 사전 대응하고자 비축사업 예산을 전년도 대비 올해 약 700억원 이상 증액하였고, 수산물수매 지원사업도 약 300억 증액하였다. 하지만 산지중도매인이나 수산물수출업체 대상 용자사업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우수수산물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동결되어 이들 2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2. 수산발전기금 신규사업 제안

1) 신규사업 발굴 기본 원칙

신규사업은 현장의 단순 민원성 사업을 최대한 배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탄소 중립,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 거시 외부환경 변화와 기금의 설치 목적·용도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3가지 제안하였다.

(1) 수산가공수출업체 시설 지원

가. 사업 필요성

현재 수발전기금에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며, 수산물가공수출업체 시설·장비 현대화와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수발전기금 신규 사업으로 수산가공수출업체 시설 지원사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수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인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나. 용자조건

자금의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인 만큼 10년으로 하고 거치기간을 3년으로 한다. 용자금리는 유사 성격의 기금(농안기금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정금리(보통 2.0~3.0%)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어업인(법인 등) 및 일반 업체에 따라 금리조건을 달리 적용한다.

용자한도는 최초 시행 시 개소당 10억원 이내로 한도를 정하고 추후 사업지원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하도록 한다.

(2)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가. 사업 필요성

수산물은 농산물 대비 부패가 빠르고 유통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교차오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통단계와 유통시간을 단축한 직거래(온라인 등) 시스템 구축이 어느 식품보다 중요하다. 참고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수발기금의 용도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기금 사업에는 빠져있으며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안할 만하다.

한편, 농안기금과 촉발기금 등의 직거래 지원사업 사례로 볼 때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직거래 매장 신규개설 등 시설자금과 국산 수산물 구매비용 조달 용도의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토록 한다.

나. 용자조건

자금의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총 상환기간을 5년, 거치기간을 2년으로 한다. 운영자금의 경우 총 상환기간을 거치기간 없이 1년으로 한다.

용자금리는 유사 기금(농안기금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촉발기금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정금리(보통 2.0~3.0%)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고객의 성격(어업인·영어조합법인, 일반 업체)에 따라 금리에 차이를 둔다.

용자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앞의 수산가공수출업체 시설자금을 비하면 소규모 이므로 개소당 3억원, 운영자금은 국산 수산물 원료 조달을 위해 개소당 5억원 이내로 하되 추후 사업지원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한다.

(3) 어류양식장 폐사어 처리 지원

가. 사업 필요성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대형 태풍 빈발, 적조 및 고수온 발생 등으로 어류양식장의 폐사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어류 폐사체의 신속한 수거를 통한 악취 발생 및 연안 위생환경 저해 예방,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친환경 퇴비화 등 자원 재활용을 통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고자 어류양식장 폐사어 처리 지원 사업을 제안하였다.

나. 융자조건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인 것을 감안하여 10년으로 하고 거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융자금리는 유사 기금(축발기금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과의 금리 비교 등을 토대로 고정금리(보통 2.0~3.0%)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어업인(수협 등 생산자단체, 법인 등), 일반 업체(폐사체 처리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 여부에 따라 금리 수준에 차이를 둔다.

융자한도는 폐사어 수거용 부대 장비·시설,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개소당 10억원 이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되 추후 사업 실적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다.

3.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제안

1) 신규재원 발굴 기본 원칙

신규재원 발굴은 수발기금의 설치 목적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수산업에 대한 대외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원천(제5장 제1절의 수산발전기금 비전 및 전략 참조)이라는 기본원칙에도 부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상기의 기본원칙하에 대규모이면서 안정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는 3가지 신규재원을 제안하였다. 이하에서는 신규재원 후보군을 제안하고 대략적인 법령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며, 좀 더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 등은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참고로 신규 재원을 기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법정 부담금 납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 설득 및 공감대 형성, 관련 근거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수적이다.

(1)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

가. 기금화 필요성

해양 생태계 교란의 원인인 발전소 온배수 배출 사업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산자원 조성, 해양환경 개선, 어업인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발기금 재원으로 편입이 필요하다.

나. 법개정 사항

첫째,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 제1항에서 수산자원조성금 징수대상에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발전소 및 임해공장을 추가한다.

둘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에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온배수 배출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을 수발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을다.

다. 예산규모 산출(추정)

온배수 배출 톤당 1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2023년 전국의 발전소에서 배출한 온배수는 약 623.7억톤이고, 연간 600억톤 내외의 배출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은 연간 600억원 규모로 편입할 수 있다.

(2)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가. 기금화 필요성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은 현재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으며,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훼손, 어업인 피해 등 다양한 현장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수산분야(어업인 등)는 직접적인 피해 보전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벌금이 피해 어업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본 담보금을 수발기금 재원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나. 법개정 사항

첫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4조의2(담보금 등의 납입) 신설이 필요하다. 즉, “「동법 제21조(몰수 또는 추징)에 따른 추징금 및 제24조(담보금의 보관·국고귀속 및 반환 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기금의 설치)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둘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4조2에 따라 납입되는 담보금”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담보금을 수발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예산규모 산출(추정)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0억원 내외 수준의 징수 실적을 보였고, 2019년 123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코로나 시국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80억원 미만 수준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다. 이에 본 담보금을 기금화할 경우 대략적으로 연간 50억원~200억원 사이에서 재원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3)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

가. 기금화 필요성

유어낚시는 최근 국민 레저 활동으로 보편화되었고, 낚시활동로 인해 환경 오염과 중요 수산자원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유어 낚시 자원 부담금 도입을 통해 유실된 낚시 도구 수거 및 수산자원 조성 비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나. 법개정 사항

첫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6조(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한다. 신설 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어낚시 자원관리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어낚시업자에게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다. 또한 「동법」 제5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은 낚시터 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연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한다.

둘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6조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유어낚시객 및 낚시(터)업자에 대한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을 기금화할 수 있다.

다. 예산규모 산출(추정)

유어낚시 산업은 낚시용 기자재와 유어선 이용 티켓 등 대략적으로 2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을 낚시터와 낚시어선 티켓, 각종 기자재류 구입 시 간접세 명목으로 1%만 부과하더라도 연간 200억원 수준의 부담금 징수가 가능하다.

제 2 절

정책 제언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금의 비축사업과 수산물수매지원 등 수산물 가격지지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수발기금의 신규재원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즉,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재원의 발굴과 지속적인 편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결책으로 앞서 살펴본 3가지 신규재원 후보군의 기금 편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신규재원의 기금 편입을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절차가 선결조건이다.

1) 신규재원의 수발기금 편입에 대한 정부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발전소 온배수 배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유어낚시 행위 등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연안 어장을 가꾸고 이용하는 당사자인 어업인에게도 어업 경영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상기 행위들에 대하여 수산자원 조성과 해양환경 보전, 어업인과 수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부담금 또는 담보금을 징수한 후 수발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로, 현재까지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 중국어선 불법어업 담보금,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의 기금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기금 편입을 위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합의점 도달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수익자,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부담금이나 담보금 등을 수익자로부터 징수한 후 수발기금 재원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각계가 모여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범부처 협의**의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법개정을 통해 신규재원의 기금 편입 법적 근거 마련

대국민, 범부처, 국회, 수익자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이후에는 의원 입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수발기금 및 신규재원과 관련된 근거법령 개정을 통해 기금 편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다.

참고로 아래의 법개정 방향은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세부적인 법리 검토나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 제1항에서 수산자원조성금 징수대상에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발전소 및 임해 공장을 추가한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담보금’과 관련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담보금 등의 납입) 신설이 필요하다. 즉, “제21조(몰수 또는 추징)에 따른 추징금 및 제24조(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46조(기금의 설치)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의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6조(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하며,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어낚시 자원관리 및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유어낚시업자에게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다음으로 발전소 온배수 부담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유어낚시 자원 부담금을 수발기금 재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 마련과 병행하여 수발기금 근거 법령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제46조(기금의 설치), 제47조(기금의 조성), 제49조(기금의 용도)의 조항 일부를 각 신규재원의 근거법령 수정사항에 부합 하도록 조항 신설 등 법개정을 추진한다.

이상으로 신규재원의 기금화를 위해 정부와 이해 관계자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 방향에 대해 크게 2가지 정도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아울러 향후 신규재원 편입 논의 절차와 함께 후속연구를 통해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업 시행지침과 예산 배정 등 후속 조치 진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자료]

기획재정부(2022), 「수산발전기금 2022년 기금준치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2023), 「2022년 기금현황」.

김우경(2020), 「수산발전기금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재원마련 방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2011),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2012),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및 실행방안 연구」.

대한민국정부(2021),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

박진규·이미용·이창수·박지훈(2016), 「수산발전기금 신규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수산발전기금사무국(2022), 「수산발전기금 업무현황」.

조용준(2020), 「수산발전기금 사업 성과평가지표 개선」,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주문배·정갑용·이상민·최수정(2003), 「우리나라 수산관련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2005), 「수산발전기금의 중장기 발전방향」.

해양수산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 -」.

[언론 자료]

대한뉴스(2022.9.27.), “한수원 발전 5개사,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623.7 억톤 해양에 배출”.

서울경제(2023.7.9.), “낙시인 1000만 시대... ‘낙시환경부담금’ 도입 재추진”.

어업인수산(2021.10.27.), “중국어선 침략 조업 또다시 극성, 불법조업 담보금 반드시 피해어업인에 돌려줘야”.

인천일보(2023.6.15.), “낙시산업 호황...바닷속은 골병-3. 바다 오염 막을 방안은”.

[법령 및 규정 자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축산법」.

[인터넷 자료]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funding/emfaf_en).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nongshinbo.nonghyup.com/user/indexMain.do?siteId=nongshinbo>).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https://www.jfa.maff.go.jp/j/keiei/index.html>).

후쿠시마현 홈페이지(<https://www.pref.fukushima.lg.jp/sec/36035e/suisanka-shikin-top.html>).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수산발전기금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

발행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발행인	회장 노동진
편집인	수산경제연구원장 엄기두
수산경제연구원 연락처	전화 (02) 2240-0416 팩스 (02) 2240-0420
인쇄처	(주)에이치에스광장 (02) 861-6680
발행일	2023. 10

〈비매품〉

수산발전기금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

